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지침

2019. 6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목 차

I . 목 적	1
II . 용어의 정의	1
III . 추진체계	3
IV . 추진절차	7
V .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7
VI . 참여기업 신청 및 선정	8
VII . 참여기업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11
VIII . 사업비 집행	16
IX . 사업관리	18
X . 부칙	25
<별표 및 별지 목록 >	26

I. 목 적

이 지침은「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제17조 규정에 따라 해외규격인증획득 비용을 지원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용어의 정의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 “관리기관”이란 사업에 대한 출연금의 관리·집행, 사업의 협약체결, 중간 및 최종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을 말한다.
3. “참여기업”이란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 중소기업으로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관리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을 말한다.
4. “과제책임자”란 사업을 수행하는 참여기업의 임·직원을 말한다.
5. “첫걸음기업”이란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에 ‘15년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소관 수출지원사업 지원 이력이 없는 기업을 말한다.
*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 :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정보, 신청·접수 현황, 지원이력 등의 자료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www.sims.go.kr)
6. “선정위원회”란 지원대상 기업 선정 및 각 선정 기업별 지원예산 결정 등 “Ⅲ. 추진체계 5. 선정위원회 라.”를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7. “전문가위원회”란 【별표 1】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이외의 추가 인증에 대한 지원여부 심사, 성실실패 여부 심사, 참여기업 또는 컨설팅기관의 이의신청 등 “Ⅲ. 추진체계 중 6. 전문가위원회 라.”를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8. “컨설팅기관”이란 관리기관이 “IX. 사업관리 3. 컨설팅기관 및 컨설턴트 관리”를 통해 일정 자격 등을 평가하여 지정한 기관으로 참여기업의 신청을 받아 해외 규격인증획득에 필요한 대행 및 기술자문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9. “컨설턴트”란 컨설팅기관에 소속되어 인증획득을 대행하거나 참여기업과 함께 과제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0. “해외규격인증”이란 【별표 1】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과 전문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결정된 규격인증을 말한다.
- 가. “CoC(공인적합인증, Certificate of Conformity)”란 해외규격인증 중 제3자(인증기관)의 적합성 인증으로 인증서가 발행되는 인증을 말한다.
- 나. “DoC(자기적합선언, Declaration of Conformity)”란 해외규격인증 중 제조자가 스스로 인증의 적합함을 선언하거나 시험성적서로 인증을 갈음하는 것(인증 제도상 제3자(인증기관)가 관여하지 않는 인증 포함)을 말한다.
- 다. “고비용인증”이란 인증획득비용 중 컨설팅비를 제외한 인증·시험비용의 합이 3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인증을 말한다.
11. “신남방·북방국가인증”이란 아래 해당 국가에서 시행하는 인증을 말한다.
- 가. “신남방국가”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 인도를 말한다.
- 나. “신북방국가”란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아르메니아, 몰도바, 몽골을 말한다.
12. “수출실적”이란 관세청에서 제공받은 직접수출액을 말하며, 관세청 미 집계 무체물(소프트웨어, 전자서적, 음향물 등) 수출실적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는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한 용역/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 상의 수출실적을 말한다.
13. “성실실패”란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였으나, 시험·인증의 부적합 등으로 인해 인증획득에 실패한 기업으로 전문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된 경우를 말한다.
14. “심화교육”이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중소기업의 인증획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3일 과정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전문화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15. “공모지원”이란 중소벤처기업부의 모집공고에 의거 신청·접수한 기업에 대해 운영지침에 따라 평가·선정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16. “교육연계지원”이란 심화교육 이수 후 컨설팅기관 의존없이 독자적 인증획득 추진 기업에 대해 평가를 생략하고 해당 인증 1건을 우선 선정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17. “인증획득비용”이란 인증획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용을 말하며, “인증비”란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용, “시험비”란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한 비용, “컨설팅비”란 “7. 컨설팅기관”에 해당하는 컨설팅기관의 인증획득 대행 및 기술자문 등 서비스 인증획득비용을 말한다.

III. 추진체계

1. 중소벤처기업부

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라 한다)의 책임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 (1)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 (2) 관리기관 관리·감독
- (3) 협약, 평가, 사업비 집행에 대한 총괄 지도·감독

2. 관리기관

가. 관리기관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사업의 세부계획 수립 및 운영지침 제·개정
- (2) 신청기업의 접수 및 평가
- (3) 전문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4) 선정기업과의 협약체결
- (5) 사업과제의 진도관리 및 점검

- (6) 사업의 정부지원금 관리 및 집행
- (7) 사업을 위한 동향분석, 정보 수집 및 배포
- (8) 컨설팅기관의 모집, 실태점검 등 참여기업의 인증획득 지원을 위한 컨설팅 기관 운영·관리
- (9) 기타 사업수행을 위하여 중기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3.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해외규격인증 교육계획 수립 및 진행
- (2)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 (3) 지원대상 기업 선정

4. 참여기업

가. 참여기업의 과제책임자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 (1) 지침의 숙지와 준수
- (2)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 (3) 사업 과제 진도관리 및 점검 협조
- (4) 사업 진행 중간보고서 제출
- (5) 사업 과제 완료보고서 제출
- (6)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협조 등

5. 선정위원회

가. 지방청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나. 지방청장은 위원 위촉 기준을 충족하는 자 중 7인 이내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하여 선출한다.

- (1) 선정위원은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 유관기관으로 구분하여 고른 참여를 유도하되, 산업계 비중을 높게 편성 (50% 이상 권장)
- (2) 선정위원 중 기업 현장을 잘 아는 여성위원 비중을 높게 편성 (30% 이상 권장)

<선정위원회 위원 위촉 기준>

- (1) 산업계 :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학사 +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자
- (2) 학계 :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 (3) 연구계 :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학사 +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 (4) 공무원 : 6급 이상
- (5) 전문가 : 관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기술지도사 등 기술/경영 분야 정부 공인 자격증 소지자 및 변호사
- (6) 기타 :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10년 이상

다. 선정위원회의 의사정족수는 위원의 1/2 이상 참석하고, 참석위원의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시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라. 선정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 (1) 지원예산 규모에 따른 지원대상 기업 선정
- (2) 각 선정 기업별 지원예산 결정
- (3) 인증 심화교육 이수 기업 지원여부 결정
- (4) 기타 지방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6. 전문가위원회

가.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전문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나. 관리기관의 장은 위원 위촉 기준을 충족하는 자 중 7인 이내로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하여 선출한다.

- (1) 전문가위원은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 유관기관으로 구분하여 고른 참여를 유도하되, 산업계 비중을 높게 편성(50% 이상 권장)

(2) 전문가위원 중 기업 현장을 잘 아는 여성위원 비중을 높게 편성 (30% 이상 권장)

<전문가위원회 위원 위촉 기준>

- (1) 산업계 :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학사 +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자
- (2) 학계 :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 (3) 연구계 :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학사 +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 (4) 공무원 : 6급 이상
- (5) 전문가 : 관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기술지도사 등 기술/경영 분야 정부 공인 자격증 소지자 및 변호사
- (6) 기타 :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10년 이상

다. 전문가위원회의 의사정족수는 위원의 1/2 이상 참석하고, 참석위원의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시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라. 전문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 (1) 참여기업의 선정·평가 또는 컨설팅기관의 등록 및 실태점검 결과 이의 신청에 대한 심의
- (2) 참여기업 또는 컨설팅기관의 사업 참여제한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 (3) 참여기업의 정부지원금 정산결과 또는 회수 통보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 (4) 참여기업의 성실실패 여부 심의
- (5) 【별표 1】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 이외의 인증에 대한 지원여부 심의 (필요시 해당인증 분야 전문가 활용)
- (6)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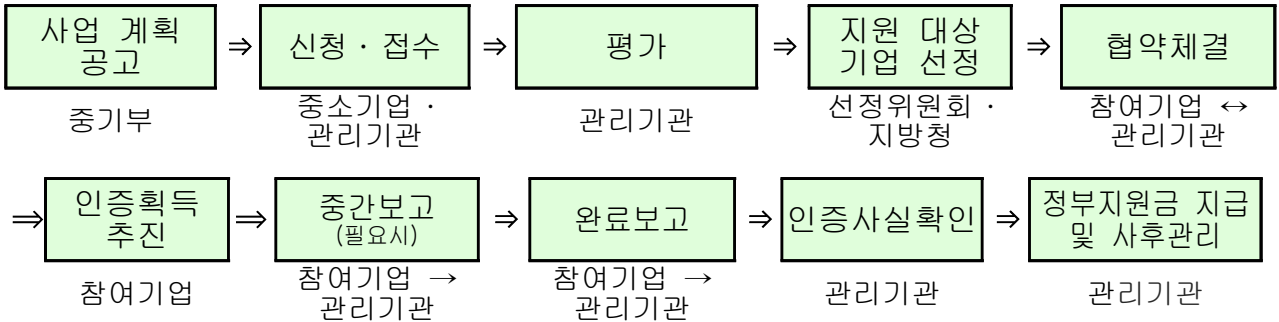
7. 컨설팅기관

가. 컨설팅기관 및 컨설턴트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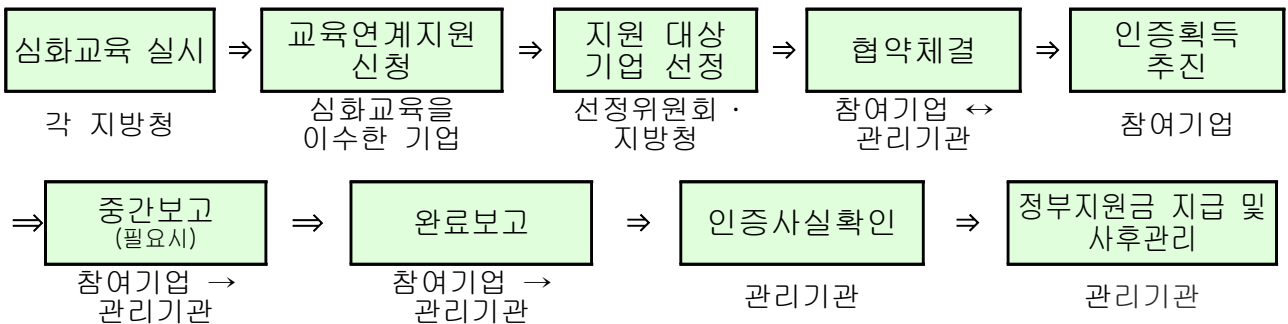
- (1) 지침 및 컨설턴트 윤리강령의 숙지와 준수
- (2) 참여기업의 인증획득 대행 및 기술자문 서비스 제공
- (3)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협조 등

IV. 추진절차

1. 공모지원



2. 교육연계지원



V.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1. 사업계획의 수립·공고

가. 중기부장관은 매년 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관리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지침을 작성하여 중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나.”에 따른 세부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사업의 목적
- (2) 지원대상과 자격
- (3) 지원예산의 규모와 지원내용, 세부사업내용 등

- (4) 참여기업 모집방법, 평가절차, 평가지표 및 선정방법 등
- (5)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라. 관리기관의 장은 운영지침상의 중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 중기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개정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인증 추가 등 경미한 사항은 관리기관의 장이 개정할 수 있다.

마. 중기부장관은 참여기업 모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바. 관리기관의 장은 참여기업 모집을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사. 지방청장은 지역 내 의견을 수렴하여 심화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VI. 참여기업 신청 및 선정

1. 참여기업 신청자격 및 제한

가.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 중소기업으로 한다.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은 당해 연도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 (1)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2)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단, 사업신청 전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가능)
- (3)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자 또는 기업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4) 사업(중전의 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이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 (5) 사업(중전의 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6) 지자체 및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인증획득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 (단, 제품분야,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 (7) '18년부터 사업에 참여하여 인증을 획득한 기업 중 기 지원받은 동일한 제품(HS CODE 6자리 기준)으로 동일한 인증을 획득하고자 신청하는 기업 (단, 신규로 수출코자하는 국가의 바이어가 해당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는 지원하고, 지원 완료 후 2년내에 해당 국가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 1년간 참여제한 조치)
- (8) 사업 공고일 기준 이미 획득한 인증에 대한 비용을 신청하는 기업

2. 공모지원 신청

가. 공모지원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1) **【별지 제1호】** 사업신청서 (이하 “신청서”라 한다.) (온라인 작성)
- (2) **【별첨 제1-2호】**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온라인 작성)
- (3) **【별첨 제1-3호】**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온라인 작성)
- (4) 사업자등록증 1부 (전산 업로드)
- (5) 2018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전산 업로드)
- (6) 고비용인증 신청의 경우 : 시험·인증기관의 견적서(청구서) 또는 계약서 1부 (해당시 전산 업로드)
- (7) 기타 평가 구비서류(**【별첨 제1-1호】** 확인 후 해당 건에 대하여 전산 업로드)

나. 신청서 제출 방법은 아래를 따른다.

- (1)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수출지원사업]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해외인증신청] → [공모지원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후 등록
- (2) **【별첨 제1-1호】** 구비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PDF, JPG, PNG 등 스캔파일 및 HWP, DOC, EXCEL 등 문서파일을 업로드 하고, 별도의 우편 서류 제출은 없음

다.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 신청서의 내용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보완(회신)이 없거나 보완 이후에도 신청서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3. 심화교육 및 교육연계지원 신청

가. 심화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수출지원사업]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교육신청] 메뉴에서 온라인 신청하여야 한다.

나. 심화교육을 이수한 기업이 교육연계지원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2.공모지원신청 가. (1) ~ (4)서류”를 갖추어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수출지원사업]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교육연계지원신청] 메뉴에서 온라인 신청하여야 한다. (단, 공모지원과 중복신청 불가)

4. 신청기업 평가

가. 관리기관의 장은 신청서의 기재사항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서류상의 하자가 없는 경우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1. 참여기업 신청자격 및 제한”의 지원 제외 대상 기업은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나. 관리기관의 장은 【별표 4】 “신청기업 평가표”에 의해 평가를 실시한다.

다. 관리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한다.

라. 관리기관의 장은 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전문가를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을 방문하여 신청 서류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마. 관리기관의 장은 인증 심화교육 이수 기업이 교육연계지원에 신청한 경우 평가를 생략한다.

5. 지원대상 기업 선정

가. 관리기관의 장은 지방중소기업 육성, 신청기업수 등을 고려하여 각 지역별로 지원예산을 배정한다.

나. 지방청장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배정된 예산규모에 맞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한다.

- (1) 지원대상 기업 평가의 적정성
- (2) 과제별 인증획득비용 규모
- (3) 지원 우선 순위
- (4) 기타 규격별 특성에 따라 지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선정위원회는 탈락한 기업 중 첫걸음기업만을 대상으로 배정된 예산의 10% 범위 내에서 참여기업을 추가 선정한다.

라. 관리기관의 장은 교육연계지원 신청기업 명단을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선정 여부는 선정위원회에서 확정한다.

마. 지방청장은 “나. ~ 라.”의 선정여부를 신청기업 및 관리기관의 장에게 공문으로 통보 하여야 한다.

바. 선정된 이후라도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되거나, 신청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 또는 실제 과제 수행내용과 상이하여 선정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VII. 참여기업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1. 협약체결

가. 선정된 기업은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리기관의 장과 전자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협약체결기간은 관리기관의 장이 별도로 공지 할 수 있다.)

- (1) 선정된 기업은 **【별지 제2호】 “협약서”** 및 **【별첨 제2-1호】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책 분석 및 사후관리 정보 활용 동의서”**를 동 사업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서 작성하고 공인인증서 인증한 후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2) 관리기관의 장은 제출된 협약서를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상이 없으면 협약을 체결한다.
- (3)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약 연장이 필요한 경우 협약기간 내 1회에 한해 협약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의 장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나. 선정된 기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협약체결 종료일을 기준으로 참여제한 조치한다.

2. 협약의 변경

가. 참여기업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기관의 장에게 협약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인증명칭 및 인증품목의 변경 또는 일부 포기

- ㉠ 수출대상국 변경, 바이어와의 협의 변경 등 타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바이어 요청서, 수출실적, 수출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신청 (단, 참여기업 '신청자격 및 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인증은 변경할 수 없다.)
- ㉡ 정부지원금 한도액은 협약 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2) 컨설팅 기관의 변경 또는 컨설팅계약 해지

- ㉠ 변경사유 및 신규컨설팅 기관과의 계약서(협약당시의 컨설팅기관과 계약 해지 후 직접 인증취득 수행 시에는 생략가능)를 첨부하여 변경신청 (단, 선정 시 독자적으로 추진키로 한 인증은 해당 없음)

(3) 참여기업의 상호, 소재지 등의 변경

- ㉠ 상호변경, 대표자변경, 양도양수로 인한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법인 사업자는 변경사항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을, 개인사업자는 변경 전·후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변경신청
- ㉡ 기업의 양도, 인수·합병이 발생하여 그 기업을 양수 받은 자 또는 합병에 의해 설립된 기업은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과제를 승계

(4) 과제 책임자 등 기타 중요사항 변경

- ㉠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신청

나. 참여기업이 협약 기간 내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서 “협약변경신청” 메뉴를 선택하여 변경내용을 작성하고 공인인증서로 인증한 후 관리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협약의 해지 및 취소

가. 관리기관의 장은 협약을 체결한 후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참여 기업이 사업의 과제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1) 참여기업의 부도 및 폐업
- (2) 참여기업이 사업 과제의 수행을 임의로 포기한 경우
- (3) 과제수행기간 내에 과제의 수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 (4) 특별한 사유 없이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5) 추진 중인 과제의 목표가 다른 사업용역의 수행에 의하여 사실상 성취되어 본 과제 수행을 계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 (6)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를 수행한 경우
- (7) “VI. 참여기업 신청 및 선정. 5. 지원대상 기업 선정. 바”의 사유로 선정을 취소하는 경우
- (8)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과제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4. 과제수행

가. 참여기업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내에 과제를 완료하여야 한다.

나. 참여기업은 동 사업에 등록된 컨설팅기관 및 컨설턴트를 통하여 인증 획득절차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담당 컨설턴트가 명시된 컨설팅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중간보고

가. 참여기업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후 사업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서 “중간보고” 메뉴를 선택하여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참여기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협약을 해지하며, 해지일을 기준으로 참여제한 조치한다.

6. 과제의 포기

가. 참여기업은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 홈페이지 (<http://www.exportcenter.go.kr>)에서 “포기신청” 메뉴를 선택하여 포기사유를 작성하고 공인인증서로 인증한 후 포기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관리기관의 장은 “가”에 따른 참여기업에 대해 포기승인일을 기준으로 참여제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2개 이상의 인증을 협약하고 과제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은 협약의 변경으로 간주하고 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7. 완료보고

가. 참여기업은 인증획득을 완료한 경우 사업 홈페이지(<http://www.exportcenter.go.kr>)에서 “완료보고 등록” 메뉴를 선택하여 온라인 등록 후 다음의 서류를 인증획득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편 또는 방문으로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별지 제5호】 완료보고서 1부 (온라인 등록 후 출력하여 대표자 직인 날인)
- (2) 성과보고서 1부
- (3) 인증서사본 1부 (DoC인증의 경우 참여기업의 적합선언문 사본 1부)
- (4) 인증심사보고서 1부 (인증심사를 진행한 경우에 한함)
- (5) 공장심사보고서 1부 (공장심사를 진행한 경우에 한함)
- (6) 시험성적서 1부 (각 시험규격별 요약본)
- (7)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인증비용, 시험비용, 심사비용, 컨설팅비용 등에 대한 Invoice(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도 가능) 각 1부(비용청구에 대한 상세항목이 명시되어야 함)
- (8) 각 해당기관에 이체한 송금(이체)증명서 1부(인증비용, 시험비용, 컨설팅비용 등 지급확인용)

(9) 정부지원금 지급받을 통장사본 1부(법인일 경우 법인명의 통장사본, 개인일 경우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10) 사업자등록증 1부 (변경된 경우에 한함)

- ※ 각 첨부서류 사본에는 장마다 반드시 “원본대조필”과 “직인” 날인
- ※ 과제수행 마감일 우편 소인분 까지만 인정

나.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의 인증을 협약한 경우, 과제수행이 모두 완료된 후 완료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우선 완료된 인증에 대해 부분완료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 관리기관의 장은 완료보고서 제출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보완(회신)이 없거나 보완 이후에도 제출서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완료보고를 반려할 수 있다.

8. 과제의 실패

가.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수행기간 내에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고 해지일을 기준으로 참여제한 조치한다.

나. 과제를 수행하지 못한 참여기업이 성실실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 홈페이지 (www.exportcenter.go.kr)에서 “성실실패보고 등록” 메뉴를 선택하여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실패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의 서류를 협약완료일 전·후 15일 이내에 우편 또는 방문으로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성실실패보고서 1부 (온라인 등록 후 출력하여 대표자 직인 날인)
- (2) 시험성적서 1부 (각 시험규격별 요약본, 부적합 시험성적서 포함)
- (3) 인증심사보고서 1부 (인증심사를 진행한 경우에 한함, 부적합 보고서 포함)
- (4) 공장심사보고서 1부 (공장심사를 진행한 경우에 한함, 부적합 보고서 포함)
- (5)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인증비용, 시험비용, 심사비용, 컨설팅비용 등에 대한 Invoice(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도 가능) 각 1부(비용청구에 대한 상세항목이 명시되어야 함)
- (6) 각 해당기관에 이체한 송금(이체)증명서 1부(인증비용, 시험비용, 컨설팅비용 등 지급확인용)

(7) 정부지원금 지급받을 통장사본 1부(법인일 경우 법인명의 통장사본, 개인일 경우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8) 사업자등록증 1부 (변경된 경우에 한함)

※ 각 첨부서류 사본에는 장마다 반드시 “원본대조필”과 “직인” 날인

VIII. 사업비 집행

1. 사업비 집행

가. 공모지원의 정부지원금 지급 비율은 참여기업의 전년도 매출액이 30억원 초과 시 인증획득비용의 50%, 30억원 이하 시 70%로 차등 지원하며, 다만, 성실실패시에는 인증획득비용의 50%와 성실실패 신청일기준 지출한 인증획득비용과 협약금액의 50%를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지원한다.

나. 교육연계지원의 정부지원금 지급 비율은 전년도 매출액과 관계없이 인증획득비용의 70%를 지원하며, 성실실패시에도 성공과 동일한 지급 비율로 지원한다.

다. 선정 시 독자적으로 추진키로 한 인증은 컨설팅비를 제외한 인증비, 시험비만을 지원한다.

라. 과제수행에 필요한 인증비용, 시험비용 및 컨설팅비용은 참여기업의 통장에서 출금되어야 한다.

2. 정부지원금의 중간정산 지급

가. 관리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이 인증획득비용 정부지원금 중간정산 신청 시 인증획득비용의 50%와 중산정산금 신청일 기준 지출한 인증획득비용과 협약금액의 50%를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정부지원금 중간정산으로 1회에 한해 지급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간정산금을 지급한다.

나. 참여기업의 정부지원금 중간정산 신청은 사업 홈페이지(<http://www.exporthcenter.go.kr>)에서 “정부지원금 중간정산 신청” 메뉴를 선택하여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온라인 작성하고 다음의 관련서류를 업로드한 후 공인인증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 (1) 인증획득비용(예상비용 포함)에 대한 해당 기관별 인증비용, 시험비용, 컨설팅비용의 Invoice(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도 가능) 각 1부 (비용청구에 대한 상세항목이 명시되어야 함)
- (2) 해당 기관별 인증획득비용 송금(이체)증명서 1부 (인증비용, 시험비용, 컨설팅비용 등 지급확인용)
- (3) 정부지원금 중간정산 지급받을 통장사본 1부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 통장사본, 개인일 경우 대표자명의 통장사본)

3. 정부지원금 지급

- 가. 관리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이 인증획득을 완료하여 완료보고 또는 부분완료 보고를 한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인증서 사실 확인 등을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약체결 당시의 지급기준에 따라 참여기업에 정부지원금을 지급한다. 단, '16~'18년 중국인증집중지원 사업 참여기업이 경영악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수행기관에 잔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참여기업의 요청에 따라 참여기업에 지급할 정부지원금을 과제 수행에 참여한 수행기관에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범위는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행기관의 미수금 범위내로 한정한다.
- 나. 참여기업이 실제 지출한 인증획득비용에 대해 "Ⅷ. 사업비 집행 1. 사업비 집행 가."에 따른 지급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과 **【별표 3】**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기준" 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지급한다.
- 다. 협약에서 정한 인증과 다른 인증을 획득 하였을 경우 **【별표 3】**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기준"을 적용하여 협약금액 내에서 정부지원금을 지급한다.
- 라. 참여기업이 과제수행기간 중 중간정산 또는 부분완료로 정부지원금을 기 지급받은 경우 "나"에 따라 산정된 정부지원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한다.
-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정부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1) 지자체 및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2) 완료보고 또는 정부지원금 정산 시 인증의 효력을 상실한 경우

(3) 사업공고일 이전에 획득한 경우

(4) 실패 또는 부적합 등으로 인하여 인증획득비용이 중복으로 소요된 경우

(5) 기타 중기부장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이 인증획득 시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4. 정부지원금 환수

가. 수출 및 매출실적 허위기재(제출) 등 허위보고 및 관련문서의 위·변조로 정부지원금을 부당하게 지급 받았을 경우 협약이 해지되며, 해지일을 기준으로 참여제한 조치하고 기 지급된 정부지원금을 환수한다.

나. 참여기업이 협약체결 후 과제수행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않거나 포기하여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지일을 기준으로 참여제한 조치하고 기 지급된 정부지원금을 환수한다.

다. 정부지원금 중간정산을 받은 기업이 인증획득에 실패하였으나 전문가위원회 심의 후 성실실패로 인정되는 경우 “2. 정부지원금 중간정산 지급 가.”에 따라 기 지급된 중간정산금은 미환수하되, 재 정산결과 초과 지급된 금액은 환수한다. (단, 성실실패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전액 환수한다.)

라. “가. ~ 다.”에 따라 환수 통보받은 참여기업은 통보받은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리기관의 장에게 정부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IX. 사업관리

1. 수출실적관리

가. 관리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의 수출실적을 관세청에서 제공받아 관리할 수 있다.

나. 관리기관의 장은 관세청 미 집계 무체물(소프트웨어, 전자서적, 음향물 등) 수출실적을 보유한 참여기업의 경우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한 용역/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 제출받아 관리할 수 있다.

다. 수출실적은 인증획득 전년도(T-1)부터 인증획득 후 5년(T+5)까지 관리할 수 있다.

2. 집중관리

- 가. 사업완료일로부터 1년간 수출이 미 발생한 인증획득기업에 대해 지방청 수출지원센터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수출애로 상담, 수출사업 연계지원 등 밀착관리 할 수 있다.
- 나. 관리기관의 장은 “가.”에 해당하는 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KOTRA,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수출입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 기업은행,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 등 중소기업 해외진출지원협의회 참여기관에게 기업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다.

3. 컨설팅기관 및 컨설턴트 관리

- 가. 관리기관의 장은 컨설팅기관을 절차에 따라 모집하고, 등록하여 관리한다.
- 나.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컨설팅기관은 다음의 신청 자격 요건을 갖추어 관리기관의 공고에 따라 사업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 신청하여 컨설팅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 (1) 컨설팅기관은 “(2)”의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상근 컨설턴트 2명 이상을 최근 6개월간 지속적으로 고용 유지(컨설턴트 퇴사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2개월간 공백 기간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자가 컨설턴트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1인 기업은 타 컨설팅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여야 한다. (컨소시엄 대표를 1인 지정하여야 함)
 - (2) 컨설턴트는 【별표 6】의 “컨설턴트 윤리강령”을 준수, 실천하여야 하고, 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제품인증지원 실적이 다음의 하나를 만족하여야 한다. (정부, 지자체 인증사업 및 개별 인증획득 실적도 인정, 고비용인증인 경우 실적을 2배수로 인정)
 - ㉠ 기술사자격 보유하고 해외규격 인증분야 1년 이상 경력과 최근 2년간 제품인증 지원실적이 4건 이거나, 기사(산업기사 포함) 또는 기능장을 보유하고 해외인증분야 2년 이상 경력과 최근 2년간 제품인증지원 실적이 5건 이상인 자
 - ㉡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자격을 보유하고 해외규격인증분야 1년 이상 경력과 최근 2년간 제품인증 지원실적이 4건 이상인 자

- 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해외규격인증분야 3년 이상 경력과 최근 2년간 제품인증 지원실적이 5건 이상인 자
- ㉕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해외규격인증분야 5년 이상 경력과 최근 2년간 제품인증 지원실적이 5건 이상인 자
- ㉖ 해외규격인증분야 7년 이상 경력과 최근 2년간 제품인증 지원실적이 5건 이상인 자

다. 관리기관의 장은 컨설팅기관이 “나.”에 절차에 따라 신규 등록 신청을 하면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자격요건에 만족 시 컨설팅기관 및 컨설턴트 등록을 승인한다. 필요시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라. 컨설팅기관 및 컨설턴트는 등록된 품목분야에 한해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컨설턴트 추가, 기관명 변경, 주소 변경, 인증 또는 품목분야 추가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관리기관의 공고에 따라 사업 홈페이지(<http://www.exportcenter.go.kr>)에 신청하여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마. 관리기관의 장은 “라.”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으면 제출서류 검토 후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통하여 변경사항을 승인한다.

바. 관리기관의 장은 컨설팅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실태점검을 실시하며, 필요 시 2회 이상 추가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점검방법 및 점검내용은 실태 점검 시 별도로 공지한다.

사. 관리기관의 장은 컨설팅기관을 이용한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완료보고 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불만족 발생으로 특별 실태점검에서 부적합으로 판정 된 경우 컨설팅기관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아. 관리기관의 장은 특정 컨설팅기관, 컨설턴트 관련 민원 반복발생시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자. 사업 참여 컨설팅기관 또는 컨설턴트는 자격유지요건을 항상 만족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 컨설턴트는 동 사업 실태점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4개 이상의 제품인증 참여 실적이 있어야 한다.

차. 동 운영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관리기관의 장이 별도로 공지한다.

4. 지도점검 및 자료제출

가. 관리기관의 장은 과제의 중간점검이나 수행결과의 검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참여기업 또는 컨설팅기관에 대하여 지도점검 할 수 있다.

나. 참여기업 및 컨설팅기관은 중기부 또는 관리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컨설팅 계약서, 진행 중 시험현황, 시험성적서 등 동 사업과 관련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사업 참여의 제한

가.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2) “Ⅷ. 참여기업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3. 협약의 해지 및 취소”에 따라 협약이 해지되거나 취소된 경우

나. “가”에 따라 협약이 해지되거나 취소된 기업은 기 지급된 정부지원금이 있는 경우 전액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참여기업 사업 참여 제한기준

제한 사유	제한기간	비 고
◦ 특별한 사유 없이 과제수행(협약된 인증 전체)을 포기 또는 실패한 경우 (단, 성실실패로 인정된 경우 제한하지 않음)	12 개월	VII. 6. 과제의 포기 VII. 8. 과제의 실패
◦ 특별한 사유 없이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VII. 5. 중간보고
◦ 특별한 사유 없이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VII. 1. 협약체결
◦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한 경우		운영지침 전체
◦ 특별한 사유 없이 중기부 및 관리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경우		III. 4 참여기업
◦ 특별한 사유 없이 중기부 및 관리기관의 현장 확인을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IX. 4. 지도점검 및 자료제출
◦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일인증, 동일제품(HS CODE기준)에 중복지원 후 사업완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출예정국가로 수출을 하지 않은 경우 (단, 제한기간 중 신규수출예정국가로 수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참여제한 해제)		
◦ 정부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및 목적 외 사용한 경우	24 개월	VIII 3. 정부지원금 지급
◦ 인증서, 관련문서의 위·변조 및 허위 제출한 경우	영구	VIII 4. 정부지원금 환수
◦ 정부지원금 환수의 불응하는 경우		

* 참여기업이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진행하는 과제는 취소됨

다.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컨설팅기관 및 컨설턴트에 대해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관리기관의 장은 참여 제한된 컨설팅기관 및 컨설턴트와 사업을 수행하는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즉시 참여기업에 통보한다.

- (2) 참여기업은 수행중인 과제의 컨설팅기관 또는 컨설턴트가 참여제한 조치를 통보 받은 경우, 수행중인 과제를 단독으로 추진하거나 대체할 컨설팅기관 또는 컨설턴트를 정해야한다.
- (3) 참여기업은 협약변경 내용을 “Ⅷ. 참여기업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2. 협약의 변경.” 절차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에게 변경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컨설팅기관 및 컨설턴트 사업 참여 제한기준

제한 사유	제한 기간	비 고
◦ 사업 운영지침, 윤리강령, 기타 관련 법률에 의한 의무사항을 이행치 않은 경우	12 개월	운영지침 전체
◦ 관리기관의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		IX. 4. 지도점검 및 자료제출
◦ 참여 확인되지 않은 컨설턴트에 의해 컨설팅업무가 수행되는 경우		VII. 4. 과제수행
◦ 관리기관의 현장 확인을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IX. 3. 컨설팅기관 및 컨설턴트 관리
◦ 참여 확인된 컨설턴트가 등록되지 않은 품목분야에 대해 컨설팅업무를 수행한 경우		
◦ 실태점검 공고일 기준 매년 만족도조사 결과 평균점수가 2년 연속 50점 이하인 경우		
◦ 실태점검 결과 동일한 내용으로 2년 연속 지적사항이 발생한 경우		
◦ 인증서, 관련문서의 위·변조 및 허위 제출한 경우	24 개월	VIII 3. 정부지원금 지급
◦ 정부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및 목적 외 사용한 경우		VIII 4. 정부지원금 환수
◦ 컨설팅기관 참여자격조건 구비서류 등의 위·변조 및 허위보고한 경우		

* 컨설턴트의 참여제한으로 인해 해당 컨설팅기관이 자격요건을 벗어나는 경우 컨설팅기관의 등록은 취소된다.

6. 이의신청절차 및 처리방법

가. 이의신청 구분은 다음과 같다.

- (1) 참여기업의 선정·평가 또는 컨설팅기관의 등록 및 실태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 (2) 참여기업 또는 컨설팅기관의 사업 참여제한에 대한 이의신청
- (3) 참여기업의 정부지원금 정산결과 또는 회수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나. 이의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이의신청은 통보 받은 당사자(참여기업 또는 컨설팅기관의 대표)가 1회에 한해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2) 이의 신청 당사자는 이의사유서를 포함한 공문으로 관리기관의 장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의사유서는 통보결과의 부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다. 이의신청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관리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전문가위원회에 상정 한다.
- (2) 전문가위원회에서는 이의 신청에 대한 심의를 하여야하며, 심의 과정에서 필요 시 이의신청 당사자(참여기업 또는 컨설팅기관의 대표) 또는 과제책임자(컨설턴트)가 이의신청 내용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이의신청 당사자가 참석할 수 없거나 설명이 미흡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이 대신하여 설명할 수 있다.
- (3) 관리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처리 결과를 관할 지방청장 및 이의신청 당사자(참여기업 또는 컨설팅기관의 대표)에게 30일 이내에 통보한다.

7. 사업비 관리방법

가.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으로 배정받은 정부지원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나.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의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정부지원금의 집행실적 등을 중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결과보고 및 사업비의 정산

가.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연도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사업 완료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중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관리기관의 장은 매 사업연도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정부지원금을 정산하여야 하고, 정산결과 잔액 및 이자 수익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중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 사업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다음 연도 사업에 관리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 사후 관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비 잔액 및 이자 수익 등을 정산하여 다음 연도 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9. 사업 활성화 및 홍보

- 가.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 활성화 방안과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다.
- 나. 관리기관의 장은 동 사업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신청, 협약체결, 완료보고 등에 대한 전산시스템의 간소화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실시할 수 있다.

10. 해외인증 정보수집 및 전파

- 가. 관리기관의 장은 수출대상국의 기술 장벽 및 해외규격인증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여 분석하여야 하고, 필요시 외부 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나. “가.”에 의거하여 수집된 결과물은 중소기업에게 공개 및 교육실시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담당자의 인증획득 역량강화를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1. 성(性)에 따른 차별금지

- 가. 관리기관 및 지방청은 사업의 신청, 평가, 선정, 사후 관리 등 사업 전반에 있어서 성에 따른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나. 관리기관의 장 및 지방청장은 성에 따른 차별 금지를 위반한 직원에 대하여 각 기관의 내부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 비밀유지

- 가. 관리기관 및 컨설팅기관은 사업을 통하여 알게 된 참여기업의 비밀, 영업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운영지침의 해석

- 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은 중기부장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의 해석에 따른다.

X. 부칙

1. 이 지침은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지침 시행 전에 지정된 관리기관의 장과 체결된 협약과제에 대해서는 이 지침에 의해 관리기관의 장과 체결된 것으로 보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지원금의 지급은 협약당시의 한도기준을 따른다.

별표 및 별지 목록

【별표 제1호】 국가별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 규격인증 현황 (405개)	1
【별표 제2호】 매출규모별 정부지원금 한도 기준	8
【별표 제3호】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기준	9
【별표 제4호】 2019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신청기업 평가표	12
【별표 제4-1호】 2019년 신청기업 제출서류 확인 방법	13
【별표 제4-2호】 2019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일자리평가 평가항목	14
【별표 제4-3호】 2019년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평가관련 제도개요 및 문의처 ...	15
【별표 제4-4호】 2019년 가점 대상 타 수출사업 리스트	16
【별표 제5호】 제품 시험기관 자격 기준	17
【별표 제6호】 컨설턴트 윤리강령	18
【별지 제1호】 2019년 제○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신청서	25
【별첨 제1-1호】 2019년 제○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신청기업 구비서류 ..	27
【별첨 제1-2호】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28
【별첨 제1-3호】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31
【별첨 제1-4호】 ○○○○○ 참가확인서	32
【별지 제2호】 2019년 제○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협약서	33
【별첨 제2-1호】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책분석 및 사후관리 정보 활용 동의서 ·	37
【별지 제3호】 2019년 제○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중간보고서	39
【별지 제4호】 2019년 제○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정부지원금 중간정산 신청서 ·	41
【별지 제5호】 2019년 제○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부분)완료보고서	43
【별지 제6호】 2019년 제○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실패보고서	47

【별표 제1호】

국가별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 규격인증 현황(405개)

국가별 (지원건수)	규격		
미국	3-A (미국낙농및식품가공기기인증)	AAR (미국철도협회)	ABS (미국선급협회)
	ACMI AP (미국창작재료협회)	AGA (미국가스협회)	AHRI (미국제냉난방협회)
	AISC (미국강구조물협회)	AMECA (미국자동차안전부품인증)	ANSI (미국규격협회)
	ANSI/ASHRA (미국냉동공조학회규격)	ANSI/BHMA (미국건축제품인증)	ANSI/BIFMA (미주사무및가구제품인증)
	API (미국석유학회)	ASME (미국기계학회)	ASTM (미국시험재료협회)
	BPI (미국생분해성제품인증)	CADR (공기정화물인증)	CSPC (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CPSIA (미국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CTI (미국냉각탑협회,미국열성능)	Dermatest (화학제품인피자극성등급인증)
	DLC (북미에너지절감인증)	DOE office of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에너지효율)	DOT (미국운수성)
	Energy Star (미국에너지스타)	EPA (미국환경보호국인증)	ETL (미국전기시험연구소)
	ETL SANITATION (국제보건위생인증)	FCC (미국연방통신위원회)	FCN (미국식품포장제등록제도)
	FDA (미국식품의약품국)	FDA-GRAS (미국식품안전물질등록)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미국연방항공국)
	FedRAMP (미국클라우드보안인증서비스)	FHWA (미국연방고속도로관리국)	FIPS (연방정보처리표준인증)
	FMVSS (미연방자동차안전기준)	Fugitive Emission Test (밸브유해물질누설인증)	Gold Seal (미국음용수관련인증)
	Green Seal (친환경인증)	Greenguard (친환경인증시스템)	GSA (미국연방조달청)
	HIRF (고강도전자기장)	IACP (국제경찰청장협회)	IAPMO (미국배관자재환경인증)
	ICC-ES Evaluation Reports (미국건축자재관련제도)	ITE Compliance (북미신호등인증)	MiamiDade NOA (미국건축자재인증-플로리다주)
	MIL-STD-810G (미국육군장비규격)	NCHRP (미국고속도로관련 시설물연구프로그램)	NEBS (미국네트워크장비구축시스템)
	NFRC (창호단열규정)	NGV2 (고압연료탱크규격)	NIJ (미법무성사법연구소)
	NIOSH (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NMMA (미국요트트레일러인증)	NOP (유기제품인증)
	NPC (미국위생도기규격)	NR (미국국가위원회회원자력부품수리인증)	NRTL(미국국가인정시험소)* (ARL,BACL,CSA,CSL,FM,IAPMO,I TSNA,MET,NNA,NSF,QAI,QPS,S GS,SWRI,TUVNorth,TUVPTL,TU VSUD,TUVPSG,UL19개기관)

국가별 (지원건수)	규격		
	PTCRB (북미휴대폰인증)	SCS (미국과학적환경인증시스템)	SRCC (미국태양열집열기인증)
	UL CAP (사이버보안평가프로그램인증)	UL ECV (환경성주장검증)	UPC (미국배관및기계인증)
	USCG (미국해양안전관련규제)	USDA (미국농무성환경인증)	Water Sense (미국환경보호국인증)
	WH-ETL (북미건축자재마크)	WHI (북미지역건축자재인증)	WQA (미국수질협회)
유럽	AdBlue (유럽자동차매연저감제인증)	BPR (유럽살생물제관리법)	BSI BS EN489 (열(히트)파이프지침)
	CCNR (라인강항해중앙위원회인증)	CE (유럽공동체마크)	COSMOS (유럽유기농및천연화장품인증)
	CPNP (유럽화장품등록)	Eco-Labeling (EU환경마크)	ECO-PASSPORT (섬유제조공정인증)
	EFSA (유럽식품안전청)	e-Mark (유럽연합차량용부품안전인증마크)	EN ISO 20471 (반사색안전조끼인증)
	ENEC (유럽규격전기인증)	ESV (유럽위성지구국관련인증)	EU 2092/91 (EU의유기농식품인증)
	EU-MED (유럽선박장비인증)	European Privacy Seal (유럽프라이버시실)	FIBC (산업용포장재의정전분류)
	M Classification (공공건물내섬유재료규제)	MPA (유럽소비자보호시험소)	Novel Food (신규식품과신규 식품첨가제에대한인증)
	Oeko-tex (유럽섬유환경인증)	REACH (유럽의신화학물질관리제도)	Regulation EC No 1223/2009 (유럽화장품유해물질규제지침)
	Regulation EC No 1935/2004 (유럽식품접촉물질규제지침)	Regulation EC No 79/2009 (유럽소수자동차규제지침)	RoHS (유럽유해물질사용제한)
	SEMI (유럽반도체장비인증)	Solar Keymark (유럽태양열제품적합성인증)	
네덜란드	KEMA (네덜란드전기시험소)	Kiwa Water Mark (네덜란드위생안전인증)	MIFARE Security Certification (반도체RF보안인증)
덴마크	DEMKO (덴마크전기기기검사협회)		
독일	AD2000 (독일압력용기인증)	BDIH (독일유기농마크인증)	DIN (독일규격협회)
	DVGW (독일가스식음료전문가협회)	GL (독일선급협회)	GS (독일품질안전)
	IT-Grundschutz (정보보호인증제도)	KTW test certification (독일식수관련인증)	LFGB (독일식품용품법)
	LGA (독일바이에른공업시험청)	LTF (독일감항성시험)	TUV (독일기술관리협회)
	VDE (독일전기기술자협회)	VdS (독일보험협회인증)	
영국	Allergy UK (영국알러지협회)	ASTA (영국안전규격)	BABT (영국통신기기승인)
	BBA (영국건축자재인증)	BSI (영국표준협회)	CPA (산업용제품인증)
	FIRA (영국가구산업연구협회)	I-LIDS (영국경찰비디오분석인증)	LR (영국선급협회)
	WRAS (영국수질협회인증)		

국가별 (지원건수)	규격		
이탈리아	IMQ (이탈리아전기기술협회)	RINA (이탈리아선급협회)	
프랑스	BV (프랑스선급협회)	CSTB (프랑스건축자재인증)	DGCCRF (프랑스의소비자보호 및 불공정경쟁감시국인증)
	ECOCERT (프랑스생산공장인증)	GTT (프랑스GTT선급)	NF (프랑스표준규격)
벨기에	CEBEC (벨기에전기기기시험소)	Vincotte (벨기에환경인증)	
스페인	AEI Seal of Cybersecurity for Organizations (사이버보호인증제도)	AENOR (스페인규격협회)	National Security Framework (스페인국가보안인증제도)
핀란드	FIMKO (핀란드전기기기검사협회)		
스웨덴	SEMKO (스웨덴전기기기협회)	SP (스웨덴국립시험연구협회)	
노르웨이	DNV (노르웨이선급협회)	NEMKO (노르웨이전기기기협회)	NIPH (노르웨이음용수관련인증)
	NORSOK (노르웨이표준해양규격)		
스위스	ESTI Safety Mark (전기자동차충전플러그인증)		
일본	BAA (일본자전거승인)	BOKEN (일본방직검사협회)	F☆☆☆☆ (일본친환경규격)
	FESC (일본소방설비인증)	F-mark (일본전기용품및부품)	Japan Type Approval of Maritime Equipment (일본선박형식승인)
	JAPEIC - 지원가능 인증추가 (일본용접관리프로세스인증)	JAS (일본유기제품인증)	JCMVP (암호모듈인증)
	JET PVM (일본태양광인증)	JHOSPA (일본위생수지협회의회인증)	JIS (일본표준규격)
	JISEC (IT시큐리티평가및인증)	JPAL (일본의료기기)	JWWA (일본상수도협회)
	MPHPT (일본우정통신성)	NK (일본선급협회)	PMDA (JPAL) - 지원가능 인증추가 (일본의약품인증)
	Privacy Mark (프라이버시마크제도)	PSC (일본소비생활용품안전인증)	PSE (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S-mark (일본전기용품시험소)	VCCI (일본전자파장애평가규격협의회)	일본ECOMark (일본친환경제품인증)
	일본건축자재평가	일본국토교통성인증	일본무선통신인증 (JAPANMIC,JATE,TELEC)
	일본불연재료인증	일본위생허가	일본철골제작 공장인증
러시아 (신북방)	CU (러시아강제인증)	Fire Protection Certificate 소방안전증명서	FSB (러시아암호화인증)
	GOST (러시아표준규격)	Pattern Approval Certificate (러시아계측기인증)	RS (러시아선급협회)
	RTN (러시아연방유해산업시설인증)	Russia Hygienic Conclusion (러시아위생증명)	수출.입수산물.수산가공품의품 질관리 및 위생안전
	의료기기러시아연방보건감독청 (RegistrationCertificateofMedic alDevices)		

국가별 (지원건수)	규격		
말레이시아 (신남방)	DOSH (말레이시아산업안전보건국)	MDA (말레이시아의료기기등록)	SIRIM (말레이시아표준산업규격)
멕시코	COFETEL (멕시코통신인증)	NOM (멕시코제품안전규격)	SSA (멕시코보건부·위생등록)
대만	ARTC (대만자동차및부품인증)	BSMI (대만표준검험국)	CNS (대만국가표준)
	CR (대만선급)	TFDA (대만의료기기)	
태국 (신남방)	TISI (태국공산품규격제도)	태국 식약청	
브라질	ABESE (브라질전자보안제품인증제도)	ANATEL (브라질국가정보통신국)	ANVISA (브라질식품의약품인증)
	INMETRO (브라질강제인증)		
사우디 아라비아	SASO (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터키	TSE (터키강제인증)		
싱가포르 (신남방)	BS476-22 (방화도어테스트)	CPS (싱가포르제품안전표시)	Data Protection Trustmark (데이터보호표준및적합성인증)
	HAS (싱가포르의료기기등록)	MTCS (클라우드보안인증)	NITES (NITES보안인증)
	PSB (싱가포르생산성표준원)	SINGAPORE GREEN LABEL (싱가포르친환경인증마크)	
아르헨티나	ANMAT (아르헨티나의료기기인증)	IRAM (아르헨티나전기안전협회)	
인도 (신남방)	ARAI (인도자동차협회)	BIS (인도제품인증)	CDSCO (인도약품표준통제국)
	CPRI (인도전기전력인증)	CRS (인도전자제품강제등록제도)	DCG (인도식약청)
	IBR (인도보일러규정)	IRS (인도선급인증)	MTCTE (인도통신장비보안규제)
	RDSO (인도철도인증)	STQC (인도생채인식장치인증)	TRA (인도및티벳지역농자재인증)
	WPC (인도통신기기인증)	인도자동차부품인증 (CentralMotorVehicle RegulationApproval)	
인도네시아 (신남방)	BPOM (인도네시아식약청등록)	SNI (인도네시아국가규격)	인도네시아 유무선 통신기기 인증
중국	AQSIQ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	CCC (중국강제인증)	CCIS (네트워크핵심설비및사이버보안 전용제품안전인증)
	CCS (중국선급인증)	CEL (중국에너지효율라벨)	CGAC (중국가스용품품질감독관리)
	China Environmental Labelling (중국환경표지인증)	China MSDS (중국물질안전보건자료)	China REACH (중국화학물질관리제도)
	China RoHS (중국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	CMA (중국계측학허가인증)	CPA (중국계측기형식승인)
	CSEL (중국보일러및압력용기인증)	CSQL (중국안전품질승인)	GB 18030 (중국어인코딩인증)

국가별 (지원건수)	규격		
	GB TEST (중국국가표준시험성적서)	HG/T 2888-2010 (중국고무장갑시험검사)	ICAMA (중국농업부등록)
	LA mark (중국노동보호용품마크인증)	MOH (중국수입식용수관련 안전제품위생허가)	NAL (중국통신장비허가제도)
	NEPSI (중국방폭관련인증)	NIM (중국계량과학원)	NMPA (구.CFDA-중국의료기기허가등록)
	NMPA (구.CFDA-중국화장품허가등록)	SAMR (구.CFDA-중국보건식품허가등록)	SRRC (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
	건설산업과학기술 성과평가인증	상용 암호화 제품 인증	신식품원료허가 (신식품원료및첨가제허가)
	중국 비료 허가	중국 소독제 등록	중국 수입 첨가제 등록
	중국 유기농 식품 인증	중국 컴퓨터안전제품 판매허가	중국미생물수입등록
	중국식품수화인등록 (입경화물검사검험증명)	중국자율제품인증 (CQC,CVC등)	폐기물 선적 전 검사
카자흐스탄 (신북방)	GOST-K (카자흐스탄인증)		
중동	GCC (중동적합성마크)		
캐나다	CAN/CGSB155.20 (캐나다방염원단인증)	CRN (캐나다압력제품등록)	CSA (캐나다표준규격)
	CSA STAR (클라우드서비스인증)	CWB (캐나다용접협회)	HC (캐나다의료기기인증)
	IC (캐나다산업성)	ISO/IEC 27018 (개인식별정보보안통제)	TC (캐나다위험물질운송인증)
쿠웨이트	KUCAS (쿠웨이트제품적합인증)		
페루	Registro sanitario (보건등록증)		
콜롬비아	ICONTEC - 지원가능 인증추가 (콜롬비아표준산업규격)	RETIE (변압기강제인증)	
폴란드	B mark (폴란드전기안전인증)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판매인증서		
필리핀 (신남방)	ERC (필리핀에너지규제위원회)	ETV-Philippines (필리핀환경기술검증)	PEFC (필리핀산림제품인증)
	PFDA (필리핀식품의약청)		
라오스 (신남방)	MPT (라오스우정통신부인증)		
베트남 (신남방)	CR Mark (베트남품질안전인증)	베트남 식품 인허가	베트남 의료기기 수입허가
	베트남보건부의약청화장품등록		
호주	ACE (호주ASD암호화평가인증)	ACRS (호주신뢰성인증)	ADR (호주자동차안전및배기량규격)
	AGA (가스안전인증·호주)	AISEP (호주정보보안평가프로그램)	APEC CBPR (APEC개인정보보호인증)
	AS (호주규격협회)	A-Tick (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유선)	CodeMark (호주건축법규위원회건축자재인증)

국가별 (지원건수)	규격		
	C-Tick (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무선)	RCM (호주전기전자강제인증규격)	SAI GLOBAL (호주품질보증협회:QAS)
	TGA (호주의약품규제기관)	Water Mark (호주배관제품인증)	WELS (호주물효율라벨링제도)
홍콩	OFTA (홍콩이동통신인증)		
이라크	COSQC (이라크표준)		
남아프리카	ICASA (남아프리카공화국 독립통신위원회)		
이란	CRA (무선통신기기인증)	ISIRI (이란강제인증)	MOH (이란보건부등록)
나이지리아	SONCAP (나이지리아강제인증)		
아랍 에미레이트	ECAS (전자기기인증제도)	EQM (아랍에미레이트제품적합성마크)	G-Mark (GSO통합인증)
이스라엘	SII (이스라엘표준연구소)		
우크라이나 (신복방)	Ukr SEPRO - 지원가능 인증추가 (우크라이나제품인증)		
모로코	모로코화장품사전등록 - 지원가능 인증추가		
칠레	SEC - 지원가능 인증추가 (칠레에너지관리국)		
국제	AEC-Q (자동차용전자부품품질인증)	AEM (장비제조및서비스에관한 국제무역협회인증)	ALE 1.0 (RFID제품인증)
	AMCA (공조기시스템국제협회)	ATP (부패성음식의수송적합승인)	BLUESIGN (섬유화학물질인증제도)
	Bluetooth (블루투스제품인증)	BQB (블루투스제품간호환성 확보목적의인증)	BRC IOP (국제식품안전협회 포장재승인규격)
	BRCFOOD (식품안전글로벌규격)	Chip card approval (스마트카드사승인)	Common Criteria for Information Technology Security Evaluation (정보기술보안평가)
	Conforming Golf balls (국제골프제품안전인증)	COSPAS-SARSAT (조난경보기또는위치정보제품인증)	DLMS-COSEM (계량장비프로토콜의시험인증)
	EAC (CU) - 지원가능 인증추가 (러시아화장품인증)	EFFCI - 지원가능 인증추가 (유럽화장품원료협회)	EMV (국제IC카드보안인증)
	EtherCAT Compliance test - 지원가능 인증추가 (이더넷적합성테스트)	FAIRTRADE (국제공정무역마크)	FIDO - 지원가능 인증추가 (생체인증)
	FIFA IMS (InternationalMatchStandard)	FIFA QUALITY PRO (국제축구연맹품질인증)	FSC (국제산림관리협회의회)
	FTC (화염시험인증)	G7Master (국제인쇄표준)	GLOBAL G.A.P (국제우수농수산물인증)
	GOTS (국제유기농산물규격)	GRS (국제재생섬유친환경인증마크)	HALAL (이슬람음식및영양협회) (신남방)

국가별 (지원건수)	규격		
	HDMI (PC와디스플레이의인터페이스 표준규격)	HSNO APPROVAL (유해물질과신규생물관련인증)	IAAF (국제육상경기연맹)
	IECEE (IEC안전규격상호인증)-CB	IECEX (국제방폭상호인증)	IFOAM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
	ILO (국제노동기구)	IPA (클린룸인증)	ISO 12500 (압축공기용필터국제표준)
	ISO 22899 (해양제트화재발생위험안전인증)	ISO 26262 - 지원가능 인증추가 (자동차기능안전성국제표준)	ISO 27017 (클라우드정보보안지침)
	ISO 3834 (용접ISO인증)	ISO 7096 (토공기계간관련진동규격)	ITF Ball Approval (국제테니스연맹테니스볼승인)
	ITF Classified Court pace (국제테니스연맹 테니스코트제품인증)	IWA 14-1 (국제차량보안안전인증)	KOSHER (유대교식품적법인증)
	LPCB (보안및화재예방인증)	MPR2 (전자파측정및검사규격)	NADCAP (국제항공기자동차부품인증)
	NFPA1971 (가연성제품의화재방지규격)	NON GMO (유전자변형농산물 미사용인증마크)	OCS (유기농섭유인증)
	OE (유기농목화섬유에대한인증)	OIML (국제법정계량기구)	OK compost (생분해성인증)
	OpenADR (전력수요관리인증)	PCI (신용카드단말기보안국제규격)	Profibus (국제공장자동화기기인증)
	QI (무선충전표준인증)	R&A Certificate (골프공공인구)	SG-Mark (소비자제품안전인증)
	SIL (국제안전레벨등급인증)	SINCERT (고압전기제품및부품인증)	SQF - 지원가능 인증추가 (식품품질안전)
	TCO05 (정보사무기기효율인증)	The Skin Cancer Foundation's Seal of Recommendation (피부유해자외선차단검증인증)	Toxproof (환경유해물질안전마크)
	UCI (국제사이클연합인증)	USB-IF (USB임플리멘타포럼)	WHO (세계보건기구)
	Wi-Fi Certified (Wi-Fi상호운용성인증)	WPS (선급용접절차승인)	Z-Wave Product Certification (전자제품상호호환성인증)

* 위 지원대상이 아닌 규격인증은 "기타규격 인증지원"으로 신청가능하며, 전문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 수출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품인증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하되, 시스템 인증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NRTL(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미국국가인정시험소)
미국노동부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 <http://www.osha.gov/dts/otpc/nrtl/>)에서 인정한 시험소로서 현재 19개 기관이 인정을 받음 (NRTL인정 19개기관: ARL, BACL, CSA, CSL, FM, IAPMO, ITSNA, MET, NNA, NSF, QAI, QPS, SGS, SWRI, TUV North, TUV PTL, TUV SUD, TUV PSG, UL)

* RoHS : EU RoHS, 일본J-MOSS, 중국RoHS, ELV(폐자동차처리지침), WEEE(폐가전처리지침) 등 국제환경규제에 대비한 유해물질분석을 지원(단, 동일제품은 1회에 한하여 지원)

【별표 제2호】

매출규모별 정부지원금 한도 기준

○ 매출규모별 지원비율 및 한도

지원 분야	인증건수	기업당 지원한도 (천원)	지원비율 (전년도 매출액 기준)		인증분야별 개별한도 ⁽²⁾ (천원)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공모지원	4건 ⁽¹⁾	100,000	70%	50%	[별표 제3호] 참조
교육연계 지원	1건	10,000	70%		10,000

(1) 중국·신남방·북방국가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건수 제한이 없으며, 일괄 1건으로 취급

(2) 인증분야별 개별한도는 기업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항목은 다음과 같음

- 인증비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 * 심사비 :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
- * 법정대리인 선임비 : 인증(또는 등록) 절차상 필수적으로 현지 법정대리인(책임자)을 선임해야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 컨설팅비 :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별표 제3호】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 기준

(○ : 인정/ 단위 : 천원)

해당 국가	지원 규격명	제품분야	세분류	인증획득비용 인정여부			정부지원금 한도액		분야 코드	
				인증	시험	컨설팅 인정비용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유럽	CE	전자기기 (LVD, EMC, RED)	유무선통신, 전기안전, 전자파 중 1개 시험	○	○	600	2,800	2,000	DoC-CEEL1	
			유무선통신, 전기안전, 전자파 중 2개 시험	○	○	800	4,700	3,400	DoC-CEEL2	
			유무선통신, 전기안전, 전자파 시험	○	○	2,200	8,200	5,900	DoC-CEEL3	
		기계 (MD)	EC지침 기계류부속 4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	1,100	4,200	3,000	DoC-CEMD1	
			EC지침 기계류부속 4에 포함되는 경우	○	○	2,200	4,900	3,500	CoC-CEMD2	
		의료기기 (MDD)	CLASS I	○	○	1,500	7,000	5,000	DoC-CEME1	
			CLASS II	○	○	5,000	21,000	15,000	CoC-CEME2	
			CLASS III	○	○	5,000	21,000	15,000	CoC-CEME3	
		방폭기기 (ATEX)	-	○	○	5,000	21,000	15,000	CoC-CEEX	
		압력용기 (PED)	-	○	○	1,500	7,000	5,000	CoC-CEPED	
		건설자재 (CPR)	EC지침 System 4에 해당하는 경우	○	○	1,200	5,800	4,200	DoC-CECPR1	
			EC지침 System 4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5,000	21,000	15,000	CoC-CECPR2	
		완구 (TOY)	-	○	○	600	2,900	2,100	DoC-CETOY	
		기타제품군	해당 제품군의 EC지침에 따라 인증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	○	600	4,100	2,900	DoC-CEETC1	
			해당 제품군의 EC지침에 따라 인증서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	○	○	2,800	7,000	5,000	CoC-CEETC2	
				RoHS 시험을 신규로 진행하는 경우	-	○	-	1,900	1,300	R(추가코드)
				광생물학적 시험을 추가로 진행해야하는 경우	-	○	-	1,900	1,300	B(추가코드)
		EU RoHS		RoHS 인증이 별도로 요구되는 경우에 한함	○	○	400	1,900	1,300	DoC-ROHS
		REACH (EU)	공산품	SVHC 및 후보물질 비사용 증명용 시험	-	○	600	7,000	5,000	DoC-RCH1
			화학물질	본 등록	○	○	5,000	21,000	15,000	CoC-RCH2
e-mark	자동차관련 부품	-	○	○	2,800	5,700	4,100	CoC-EMR		
CPNP	화장품	-	2,300	○	500	4,800	3,500	DoC-CPNP		

해당 국가	지원 규격명	제품분야	세분류	인증획득비용 인정여부			정부지원금 한도액		분야 코드
				인증	시험	컨설팅 인정비용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중국	NMPA (구. CFDA)	의료기기	CLASS I	○	○	10,000	11,200	8,000	DoC-NPME1
			CLASS II	○	○	30,000	21,000	15,000	CoC-NPME2
			CLASS III	○	○	30,000	21,000	15,000	CoC-NPME3
		화장품	비특수 제품 등록	500	○	1,800	3,600	2,600	DoC-NPCS1
			영·유아 제품 등록	500	○	3,000	4,500	3,200	DoC-NPCS2
			특수 제품 허가	500	○	3,000	5,300	3,800	CoC-NPCS3
			자외선 시험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	○	-	5,600	4,000	U (추가코드)
	CCC	공산품	중국강제인증	○	○	3,000	7,000	5,000	CoC-CCC
		소방제품		○	○	9,000	21,000	15,000	CoC-CCF
	중국자율 안전인증	공산품	-	○	○	3,000	7,000	5,000	CoC-CVC
	GB Test	기타제품군	GB Test 별도로 요구되는 경우에 한함	-	○	600	1,400	1,000	DoC-GBT
	중국식품 수화인등록	식품	입경화물검사검험증명 라벨링	-	○	1,500	1,100	800	DoC-SRFD1
	SAMR	식품	보건식품 등록	○	○	20,000	21,000	15,000	CoC-SRFD2
			보건식품 허가	○	○	40,000	70,000	50,000	CoC-SRFD3
China REACH	화학물질	-	○	○	30,000	21,000	15,000	DoC-CRCH	
미국	FDA	의료기기	Establishment Registration (의료기기 공장등록)	○	-	600	4,200	3,000	DoC-FDME1
			510(k) (시판 전 신고)	○	○	5,000	21,000	15,000	CoC-FDME2
			PMA (시판 전 승인)	○	○	5,000	21,000	15,000	CoC-FDME3
		기타제품군	등록 또는 검사	○	○	1,000	1,500	1,100	DoC-FDETC
	NRTL	공산품	부품 또는 제품 등 기기	○	○	800	11,200	8,000	CoC-NRTL1
		원자재	플라스틱, 전자재 등 원재료	○	○	800	21,000	15,000	CoC-NRTL2
	FCC	Declaration/ Verification	인증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	○	400	2,000	1,400	DoC-FCC1
		Certificate	인증서가 발행되는 경우	○	○	1,600	5,600	4,000	CoC-FCC2
	ASME	압력용기/ 보일러 등	U, S, PP 등 Stamp 등록비용	○	-	2,000	4,200	3,000	CoC-ASME
			AIA, Team Service 등 기타 비용을 포함하는 경우	○	○	1,000	16,800	12,000	A (추가코드)

해당 국가	지원 규격명	제품분야	세분류	인증획득비용 인정여부			정부지원금 한도액		분야 코드
				인증	시험	컨설팅 인정비용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일본	PSE	전기전자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	-	○	600	3,500	2,500	DoC-PSE1
			특정전기용품* (인증서 발급)	○	○	800	5,700	4,100	CoC-PSE2
	일본무선 통신인증	무선기기	무선 설비의 공사 설계 인증, 무선단말기의 설계 인증 등	○	○	1,300	6,000	4,300	CoC-JAMC
국제 / 기타	WPS	용접	용접절차 인증	○	○	600	6,300	4,500	CoC-WPS
	HALAL	식품/ 화장품	식품, 화장품 등	○	○	8,000	11,200	8,000	CoC-HAL
	IECEX	방폭제품	-	○	○	5,000	21,000	15,000	CoC-IECX
	선급	Inspection Certificate (검사)		○	○	600	2,500	1,800	CoC-SHIP1
		Type Approval (형식 승인)		○	○	1,200	5,600	4,000	CoC-SHIP2
	기타	인증서 미발행		○	○	1,000	3,900	2,800	DoC-ETC1
인증서 발행		○	○	2,800	9,800	7,000	CoC-ETC2		
고비용인증*				○	○	7,000	100,000		H (추가코드)

- * 인증별 한도금액 합산액은 기업당 한도금액(100,000천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고비용인증 : 인증·시험비용의 합이 30,000천원 이상 소요되는 제품의 경우, 한도금액은 100,000천원 적용 가능(단, 신청당시 사전 견적서 제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관리기관이 인정한 경우에 한함)
- * 인증 Scheme상 제품에 따라 CoC와 DoC로 구분되는 인증의 경우, DoC인증에 한도가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CoC인증의 기타인증분야로 신청가능
- * CSA, TUV 인증중 OSHA(미국노동부산하 직업안전보건청)에서 지정한 적용범위와 해당규격으로 시험한 경우에는 NRTL로 지원
- * 추가코드는 인증획득 시 필수로 요구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분야코드에 정부지원금 한도액을 합산하여 지원하는 분야임
- * 컨설팅인정비용은 지원금액이 아닌 인정가능한 컨설팅비용 한도이며, 인증·시험·컨설팅 비용을 합산하여 인정된 금액에서 50% 또는 70%비율로 지원됨
- * 컨설팅비용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에 등록된 컨설팅기관에 한하여 소요비용을 인정함
(http://www.exportcenter.go.kr/eservice_new/foreign_ktr/distuse/prdSrchList.jsp)

【별표 제4호】

2019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신청기업 평가표

접수번호 : 2019 02 00 -

기업명 :

평가항목	평가구분	배점	평가방법	점수																									
인증획득 필요가능성 (25)	시험·인증기관 접수증/견적서	10점	- 인증획득 예정 품목별 시험인증기관 접수증 또는 견적서 모두 제출(10점) - 인증획득 예정 품목별 시험인증기관 접수증 또는 견적서 1이상 제출(6점) - 인증획득 예정 품목별 시험인증기관 접수증 또는 견적서 미제출(3점)																										
	해외지식재산권 보유기업	5점	- 해외특허·상표(출원 또는 등록증, 전용실시권 포함) 보유기업 (5점) * 개인기업은 대표자, 법인은 법인명으로 등록 된 경우만 인정 * 국내 특허·상표 미인정 - 해당사항 없음 (2점)																										
	인증획득건수	10점	- 3종류 이상(10점), 2종류(7점), 1종류(4점), 미보유(2점) * 공고된 해외규격인증(405개)에 한함 * 현재 보유중인 인증 중 유효기간 내 인증만 인정 * 동일한 인증은 1건으로 인정																										
수출성장 (10)	수출 성장성 (A-B)/B*100 A:전년도 신청기업 직접수출증가율 B:전년도 전체중소기업 직접수출증가율	10점	- 전년도 전체중소기업 직접수출증가율 대비 신청기업의 전년도 직접수출증가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 colspan="6">직접수출증가율(%)</th> </tr> <tr> <th>증가율</th> <td>0</td> <td>5</td> <td>10</td> <td>15</td> <td>20</td> <td>20</td> </tr> <tr> <th></th> <td>미만</td> <td>미만</td> <td>미만</td> <td>미만</td> <td>미만</td> <td>이상</td> </tr> </thead> <tbody> <tr> <td>점수</td> <td>0</td> <td>2</td> <td>4</td> <td>6</td> <td>8</td> <td>10점</td> </tr> </tbody> </table> <p>* 내수기업의 경우 4점 부여 * 단, 관세청 미 집계 무체물(소프트웨어, 전자서적, 음향물 등) 수출실적을 보유한 경우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한 용역/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를 별도 제출</p>	구분	직접수출증가율(%)						증가율	0	5	10	15	20	20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이상	점수	0	2	4	6
구분	직접수출증가율(%)																												
증가율	0	5	10	15	20	20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이상																							
점수	0	2	4	6	8	10점																							
수출의지 (25)	수출업무담당자 역량	10점	- 경영주 또는 수출전담인력 수출관련(해외인증포함) 교육을 이수한 적이 있음(18년, 19년 교육에 한함) (3점) - 수출전담인력(경영주 포함)이 수출 관련 전공자(2점) - 수출전담인력(경영주 포함)이 수출 관련 자격증 보유자(2점) - 수출 전담조직 보유 (3점) * 각 항목별 제출서류 1건씩만 인정																										
	수출준비활동	15점	- 시장개척단 파견기업,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해외지사보유기업, 홈페이지(외국어) 보유, 외국어카타로그 (건당 3점, 최대 15점)																										
	- 수출유망중소기업(유효기간 내), 월드클래스300(유효기간 내) 선정기업의 경우 수출의지 점수 25점 부여																												
일자리 평가 (30점)	일자리 창출	21점	【별표 4-2】 참조하여 반영																										
	일자리 질	9점																											
정책고려 사항 (10)	신규수출국가 개척 도전기업	5점	- 5점: 최근 3년간 해당국가 직접수출실적(×) - 2점: 최근 3년간 해당국가 직접수출실적(○)																										
	단독추진기업	5점	- 5점 : 획득 추진 인증건 전체 독자적으로 추진 - 3점 : 획득 추진 인증건의 1/2이상 독자적으로 추진 (단, 신청건수가 2건이상인 경우부터 적용) - 1점 : 획득 추진 인증건의 1/4미만 독자적으로 추진 (단, 신청건수가 3건이상인 경우부터 적용) - 0점 : 독자적으로 추진 인증건 없음 * 선정 시 독자적으로 추진기로 한 인증은 컨설팅비를 제외한 시험비, 인증비만을 지원																										
총 계		100점																											
가점(10점)		5점	- 여성기업, - 교육연계지원 성공기업 (건당 5점, 최대 5점)																										
		5점	- 타 수출사업 연계 (5점) * 유관기관이 시행하는 수출지원 사업 참여기업 중 수출 성과가 우수하여 추천을 받은 기업																										

평가담당자 :

(인)

【별표 제4-1호】

2019년 신청기업 제출서류 확인 방법

연번	구비서류명	확인방법	담당기관	연락처
1	시험·인증기관 접수증/견적서	◦해당 인증에 대한 시험·인증기관의 - 시험인증심사 접수증/견적서(고비용인증 필수 제출) - 신청기업 제출서류 확인	-	-
2	해외지식재산권	◦현재 보유중인 해외특허·상표(출원 또는 등록증, 전용실시권 포함) - 개인기업은 대표자, 법인은 법인명으로 등록된 경우만 인정 - 국내특허·상표 미인정 - 신청기업 제출서류 확인	-	-
3	인증획득건수	◦현재 보유중인 인증(유효기간 내) - 공고된 해외규격인증(405개)에 한함 - 동일한 인증은 1건으로 인정	-	-
4	수출성장성	◦단, 관세청 미 집계 무체물(소프트웨어, 전자서적, 음향물 등) 수출실적을 보유한 경우 용역/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를 별도로 제출 한국무역협회(http://onlinetrade.kita.net) → 로그인 → 증명서 신청 및 조회 → 용역/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 발급하여 별도 제출	한국무역협회	1566-5114
5	교육이수 수료증 (해외인증포함)	◦경영주 또는 수출전담인력의 수출관련 교육 (해외인증포함) 수료증 (18년, 19년 교육에 한함) * 수료증에 기업명 미기재 경우 재직증명서 제출 * 제출서류는 1인에 한함 - 신청기업 제출서류 확인	교육주관기관	-
6	수출관련 전공자	◦수출전담인력(경영주 포함) 수출 관련 전공 (관련학과) 졸업증명서 및 해당 직원 재직증명서 - 신청기업 제출서류 확인	-	-
7	수출관련 자격증	◦수출전담인력(경영주 포함) 수출 관련 자격증 및 해당 직원 재직증명서 - 신청기업 제출서류 확인	-	-
8	수출 전담조직	◦회사조직도 및 전담 부서 인력 현황표 * 전담 직원 재직증명서 포함 - 신청기업 제출서류 확인	-	-
9	시장개척단 파견기업	◦'18년도 및 '19년도 참여기업(개별기업 참가포함) - 시장개척단 주관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또는 주관기관이 작성한 참가확인서(별첨 제1-4호) - 신청기업 제출서류 확인	중소기업중앙회 지자체 등	-
10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18년도 및 '19년도 참여기업(개별기업 참가포함) - 해외전시회 주관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또는 주관기관이 작성한 참가확인서(별첨 제1-4호) - 신청기업 제출서류 확인	해당 전시회주관기관	-
11	원산지 인증수출자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 신청기업 제출서류 확인 (유효기간 범위내 인정)	본부세관	-
12	해외지사 보유기업	◦해당국가에서 발행한 사업자등록증 - 신청기업 제출서류 확인	-	-
13	수출준비활동	◦홈페이지(영문) 보유여부 ◦외국어카타로그 - 신청기업 제출서류 확인	-	-
14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서 확인 (유효기간 범위내 인정) - 지방청 수출지원센터에서 확인	-	-
15	월드클래스300	◦월드클래스300 지정서 확인 (유효기간 범위내 인정) - WC300 및 글로벌전문기업 사이트에서 확인	-	-
16	여성기업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확인 (www.smpp.go.kr) → 로그인 → SMPP소개 → 공공기관 주요서비스 → 여성기업 확인조회	여성경제인협회	02-369-0910
17	타 수출사업연계	◦유관기관에서 시행한 수출지원 사업 참여기업 중 수출성과가 우수하여 추천을 받은 기업 - 유관기관 : 조달청,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KOTRA, 창업진흥원	해당수출 유관기관	-

2019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일자리평가 평가항목

구 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합 계			-20~100	
I. 일자리 양	1. 고용증가	가.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규모 나.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	70	
II. 일자리 질	1. 성과공유	가. 미래성과공유 협약 (+10) 나. 스톡옵션 운영 (+10) 다. 성과급 지급 (+10) 라. 임금수준 상승 (+10) 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10) 바. 우리사주제도 운영 (+10) 사.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中 1 (+10)	20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항목별 평점 합산 반영
	2. 근로환경	가. 정규직 전환 (+10) 나. 근로시간 단축 (+10) 다. 정주여건 개선 (+5) 라. 가족친화인증 (+5) 마. 청년친화강소기업 (+5) 바. 노사문화우수기업 (+5) 사. 인재육성형중소기업 (+5) 아.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5) 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5)	10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항목별 평점 합산 반영
III. 고용질서 준수	1. 법령 준수	가. 고액·상습 임금체불 (-10) 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10)	-20	

* 일자리평가 배점은 100점 만점 중 30점으로 환산되어 반영

【별표 제4-3호】

2019년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평가관련 제도개요 및 문의처

평가항목	내용 및 문의처
미래성과공유 협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중소기업이 근로자와 성과급 등을 통해 경영이익을 근로자와 공유 하겠다고 사전 협약하는 제도 ▪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055-751-9829), https://sanhakin.mss.go.kr
성과급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기업의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한 기업을 성과공유 도입기업으로 지정 ▪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055-751-9825), https://sanhakin.mss.go.kr
임금수준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근로자의 해당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연도 평균임금증가율의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한 기업을 성과공유 도입기업으로 지정 ▪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055-751-9825), https://sanhakin.mss.go.kr
우리사주제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전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기업 또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하에 근로자로 하여금 자기회사의 주식 또는 지배회사의 주식을 취득, 보유하게 하는 제도 ▪ (문의처) 한국증권금융 우리사주지원센터, https://esop.ksfc.co.kr
사내(공동) 근로복지기금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사용하기 위한 사내(공동) 근로복지 기금 법인설치 및 기금운영 기업을 성과공유 도입기업으로 지정 ▪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055-751-9825), https://sanhakin.mss.go.kr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특정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기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에 따라 일정 기간 내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055-751-9825), https://sanhakin.mss.go.kr
내일채움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부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5년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제도 ▪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1800-7900, https://www.sbcplan.or.kr/
청년내일채움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16백만원(+이자)의 만기공제금 지급하는 공제제도 ▪ (문의처) 관할 고용복지+ 센터 (1350), http://www.work.go.kr/jobcenter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청년 근로자의 장기재직과 목돈 마련을 위해 청년근로자, 기업, 정부가 공제부금을 적립하고 청년근로자가 5년 이상 재직하면 적립금+복리이자 전액을 청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제도 ▪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1800-7900, https://www.sbcplan.or.kr/
근로시간 단축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근로시간 조기단축을 시행한 기업으로서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문의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정주여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중기부-국토부(LH)가 공급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전용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부지를 제공한 기업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044-201-1664)
가족친화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여성 가족부장관으로부터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문의처) 한국건강가정진흥원(02-6309-9048), http://www.ffsb.kr
청년친화강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청년친화 강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02-2124-3305), http://www.work.go.kr/smallGiants
노사문화우수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으로부터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문의처) 노사발전재단 (02-6021-1055), https://www.nosa.or.kr
인재육성형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으로부터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055-751-9825), https://sanhakin.mss.go.kr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 적자원개발 우수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052-714-8216), http://www.hrdkorea.or.kr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 18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경영체제 및 활동이 일정수준 이상인 기업으로 안전보건경영시 스템(KOSHA 18001) 인증을 받은 기업 ▪ (문의처) 안전보건공단 (052-7030-593), http://www.kosha.or.kr

2019년 가점 대상 타 수출사업 리스트

연번	소관기관	사업명	총괄 담당자
1	조달청	해외조달 우수기업(G-PASS)	조광순 주무관 (042-724-6486)
2	대중소기업농어 업협력재단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백정선 대리 (02-368-8755)
3	KOTRA	의료산업 해외진출 선도기업 육성사업	고범창 대리 (02-3460-7621)
4		글로벌파트너링(GP) 사업	
5	창업진흥원	창업도약 패키지	김동진 주임 (042-480-4336)
합계(사업수 5개)			

제품 시험기관 자격 기준

□ 제품시험기관(Lab) 자격기준

(DoC 또는 시험성적서만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인증에 한하여 적용함)

- ① KOLAS 등 APLAC 및 ILAC에 Full-Member로 등록된 국가기구에서 지정한 시험기관 또는 CBTL 시험기관만을 인정함
- ② KOLAS의 시험기관 인정분야에 해당하지 않은 시험의 경우, 지원규격별 해당 인증기관 및 해당 인증기관에서 지정한 시험기관을 인정함

* KOLAS 인정분야 확인 : KOLAS (www.kolas.go.kr)

* Full-Member 확인 : APLAC (www.aplac.org), ILAC (www.ilac.org)

【별표 제6호】

컨설턴트 윤리강령

목 차

전 문

제 1 장 총 칙

1. 목적
2. 적용대상

제 2 장 컨설턴트의 기본윤리

1. 기본자세
2. 행동규범
3. 책임완수
4. 자기계발
5. 기술적인 역량
6. 공정한 직무 수행
7. 고객의 이익
8. 기밀유지
9. 이해관계
10. 컨설팅 비용
11. 전문 업무영역
12. 고객과의 결정사항
13. 보고

제 3 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1. 고객존중
2. 고객만족
3. 고객의 이익보호
4. 사후관리

제 4 장 지원사업에 대한 책임

1. 중소기업 육성에 기여
2. 세부사업별 지침 준수
3. 컨설팅 직무교범 준수

제 5 장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

1. 관계법령의 준수
2. 고객과의 관계
3. 기밀유지
4. 부당경쟁
5. 수수료
6. 예측
7. 광고 선전

전 문

우리는 최고 품질의 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통한 중소기업 생산성 제고를 도모하며 나아가 중소기업 육성에 기여하는 초석으로서의 중대한 사명을 깊이 인식하고 맡은바 직무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에 우리는 모두가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본방향으로서 다음과 같은 「컨설턴트 윤리강령」을 적극 실천한다.

하나, 우리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컨설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최대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며,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하나, 우리는 중소기업에 대한 고도의 윤리관과 최상의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며, 직무를 행함에 있어 전문가로서의 질적 수준을 유지한다.

하나, 우리는 모든 중소기업에게 전문화된 컨설팅 서비스를 친절히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법률과 사회적 윤리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중소기업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중소기업에 봉사하는 자세로 직무에 임한다.

하나, 우리는 컨설턴트로서의 명예, 품위, 청렴을 준수하며, 전문기술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제 1 장 총 칙

1. 목적

윤리강령은 컨설팅업무 수행시 갖추어야 할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컨설턴트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이 강령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컨설팅에 참여한 컨설턴트들에게 적용한다.

제 2 장 컨설턴트의 기본윤리

1. 기본자세

- ① 컨설턴트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 ②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전문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도록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하여야 한다.

2. 행동규범

- ① 컨설턴트는 모든 고객에게 전문화된 서비스를 친절히 제공하여야 한다.
- ②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③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객과의 신뢰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④ 고객에 대한 기밀사항을 엄수하여야 하며, 고객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여겨야 한다.
- ⑤ 전문직업인으로서의 명예, 품위, 청렴을 준수하여야 하며, 전문기술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3. 책임완수

지원사업이 추구하는 목표에 공감하여 신뢰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 하여야 한다.

4. 자기계발

공공의 이익 및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책임을 인식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고객에 대한 최고 품질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

5. 기술적인 역량

고객이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하며, 자신의 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고객들에게 가장해서는 아니된다.

6. 공정한 직무 수행

자신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알선·청탁 등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7. 고객의 이익

고객에게 가능한 한 최상의 이익을 주겠다는 목적을 갖고서 자신의 능력과 시간을 완전히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특정 서비스로부터 수익이 창출된다고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8. 기밀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기밀로 다루고 이를 보호해야 하며, 개인적 또는 그 밖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이해관계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객의 이해관계에 어긋나는 행위는 회피하도록 노력하며, 만약 이해관계가 어긋나게 될 경우에는 고객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0. 컨설팅 비용

고객에게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업적 도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보수를 받아야 하며, 자신이 제공한 서비스 내용과 맡은 책임에 알맞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비용을 고객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11. 전문 업무영역

자신의 전문 업무범위와 영역을 달리하는 분야의 업무는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12. 고객과의 결정사항

고객에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컨설팅의 목적, 대상범위, 컨설팅 비용 및 계산 방법에 대해 고객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의하여야 한다.

13. 보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일일 컨설팅 수행내용을 고객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1. 고객존중

고객을 항상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의 이익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2. 고객만족

- ①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고객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며,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고객의 이익보호

- ①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② 고객의 자산, 정보, 지적재산권 등을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인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4. 사후관리

컨설팅 서비스 제공 후에도 고객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고객에게 제공한 컨설팅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 4 장 지원사업에 대한 책임

1. 중소기업 육성에 기여

- ① 최고 품질의 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 ② 중소기업에 대한 고도의 윤리관과 직무수행의 질적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컨설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고취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세부사업별 지침 준수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세부사업별 지침에서 정해진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3. 컨설팅 직무교범 준수

고객에 대한 최고 품질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표준화된 컨설팅의 업무와 절차를 정하고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 5 장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

1. 관계법령의 준수

컨설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컨설턴트는 관계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2. 고객과의 관계

- ① 고객의 정당한 업무 의뢰를 거부·기피하거나, 컨설팅 계약 체결시 허위 약정하지 않는다.
- ② 고객이 부정한 방법 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도록 자문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입하지 않아야 한다.
- ③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직무를 행하게 하거나 관련 자격증을 대여하여 고객을 기만하여서는 아니된다.

3. 기밀유지

- ① 고객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발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 ② 고객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 및 소유 데이터, 절차, 자료를 자신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 ③ 이전 고객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이전 고객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4. 부당경쟁

- ①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중개인을 내세우거나 권력의 이용 또는 금전 등을 제공하여 자신을 위촉할 것을 강요하거나 업무를 수입하지 않아야 한다.
- ② 다른 컨설턴트가 체결한 선점 계약을 무시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5. 수수료

- ① 컨설팅 업무를 수주하기 위해 고객이나 고객의 지원부서 종사자에게 대가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고객의 조직내부에 관련된 이슈에 대해 어떤 권고를 해주는 대가로 컨설팅 비용 외의 별도의 수수료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③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중이거나 제공한 후에 고객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안을 해주는 대가로 별도의 수수료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예측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고객을 현혹시킬 수 있는 장래에 대한 예측 또는 컨설팅 제공 후의 성과에 대해 그 정확성을 단정적으로 보증하지 않아야 한다.

7. 광고 선전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실추하게 하거나 과대하게 선전하는 방법 또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해당 신청서는 참고용이니,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

2019년도 제○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신청서

(접수번호 :) (관할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이전접수번호:)

기업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	
신청구분	(공모지원, 교육연계지원)		주요 생산품목		
설립 년월일		사업의 종류(업태)		사업의 종목(업종)	
주소					
기업 전화번호			기업 팩스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E-MAIL			대표자 핸드폰번호		
과제책임자 성명			과제책임자 직책		
과제책임자 E-mail			과제책임자 핸드폰번호		
매출액 (전년도)	백만원		지원비율구분	전년도 매출액 30억원 이하(70%) 전년도 매출액 30억원 초과(50%)	

□ 신청내용

신청구분 *	수출 국가구분	수출 예정국가	인증명칭	신청품목	분야코드	품목분야 (HS code)	예상 소요비용 **	예상 협약금액 ***
신청1							천원	천원
신청2							천원	천원
신청3							천원	천원
신청4							천원	천원
⋮							천원	천원
계							천원	천원

* 신청구분 : 인증 획득 예정 품목이 여러 개인 경우 각 품목별로 신청

** 예상소요비용 : 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필수 소요 비용으로 인증비·시험비를 합한 금액(컨설팅비, 재료비, 규격 구매비 등은 제외)

*** 예상협약금액 : 인증분야별 한도기준을 적용. 고비용인증의 경우 인증획득 총 인증획득비용 (컨설팅비용 한도포함)에 매출구분비율을 적용한 금액

※ 해당 신청서는 참고용이니,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증기관, 시험기관, 컨설팅기관

추진방법	인증예정기관 (인증기관명)	시험예정기관 (시험기관명)	컨설팅예정기관 (컨설팅기관명)	컨설팅터트/ 연락처
1. 인증명 [단독추진/컨설팅기관대행]				
2. 인증명 [단독추진/컨설팅기관대행]				
3. 인증명 [단독추진/컨설팅기관대행]				
4. 인증명 [단독추진/컨설팅기관대행]				
∴				

※ 컨설팅예정기관명은 필수 입력사항임(단독 추진 또는 미등록컨설팅기관 이용시에도 필수 입력)

※ 선정 시 단독으로 추진키로 한 인 증은 컨설팅비를 제외한 인증비, 시험비에 대해서만 지원

※ 선정 시 단독으로 추진키로 한 인 증이 인증추진 과정에서 컨설팅기관을 이용한 경우 선정 무효로 간주하여 협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제품 특성			
수출성장성	<input type="checkbox"/> 용역/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 *관세청 미 집계 무체물(소프트웨어, 전자서적, 음향물 등) 수출실적을 보유한 기업에 한함 (유체물 수출실적(직접, 간접)을 보유한 기업은 해당되지 않음)		
인증획득 필요가능성	<input type="checkbox"/> 시험·인증기관 접수증 및 견적서 (고비용인증의 경우 필수 제출) *컨설팅기관의 견적서 제출시 평가점수 미인정, 단 예상소요비용은 인정 <input type="checkbox"/> 해외특허·상표(출원 또는 등록증, 전용실시권 포함) 보유기업 *개인기업은 대표자, 법인은 법인명으로 등록 된 경우만 인정 *국내특허·상표 미인정 <input type="checkbox"/> 인증획득건수 *공고된 해외규격인증에 한함 **현재 보유중인 인증 중 유효기간 내 인증만 인정함 ***동일한 인증은 1건으로 인정함		
기업 특성	<input type="checkbox"/> 경영주 또는 수출전담인력 수출관련(해외인증포함) 교육 이수 *18, 19년 교육수료증에 한함 <input type="checkbox"/> 수출전담인력(경영주 포함) 수출 관련 전공자(관련학과 포함) * 졸업증명서상의 학과(복수)전공만에 무역, 통상, 국제, 통관, 수출과 관련된 졸업증명서만 인정 ** 순수과학, 공학, 경영학, 마케팅, 어학계열 등 수출과 관련되지 않은 학과(전공) 제외 <input type="checkbox"/> 수출전담인력(경영주 포함) 수출 관련 자격증 보유자 <input type="checkbox"/> 수출 전담조직 보유 <input type="checkbox"/> 시장개척단 파견기업 <input type="checkbox"/>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input type="checkbox"/>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input type="checkbox"/> 해외지사 보유기업 <input type="checkbox"/> 외국어 카다로그 <input type="checkbox"/> 홈페이지(외국어)		
가 점	<input type="checkbox"/> 여성기업 <input type="checkbox"/> 교육연계지원 성공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공고에 따라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자

인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귀하

【별첨 제1-1호】

2019년 제○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신청기업 구비서류

□ 필수 제출서류 : 신청기업 모두 전산 업로드

- 사업신청서 1부. (온라인 작성)
- 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온라인 작성)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온라인 작성)
- 2018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전산 업로드)
 - ※ 단, 관세청 미 집계 무체물(소프트웨어, 전자서적, 음향물 등) 수출실적을 보유한 경우 한국 무역협회에서 발급한 용역/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를 별도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전산 업로드)
- 고비용인증 신청의 경우 : 시험·인증기관의 견적서(청구서) 또는 계약서 1부 (해당 시 전산 필수 업로드)

□ 선택 제출서류 : 해당되는 경우만 전산 업로드

구분	평가항목	제출서류 (해당기업에 한함)
인증획득 필요·가능성	시험·인증기관 접수증/견적서	- 시험·인증기관 접수증 및 견적서 등 * 인증 요청 대상 제품에 한함
	해외지식재산권 보유기업	- 해외특허(출원 또는 등록증, 전용실시권포함) 또는 해외상표(출원 또는 등록증, 전용실시권포함) 1부 * 개인기업은 대표자, 법인은 법인명으로 등록 된 경우만 인정 * 국내특허·상표 미인정
	인증획득건수	- 현재 보유중인 인증 중 유효기간 내 인증만 인정 * 동일한 인증은 1건으로 인정함 * 공고된 해외규격인증(405개)에 한함
수출 성장성	수출 성장성 [(A-B)/B*100] A:전년도 신청기업 직접수출증가율 B:전년도 전체중소기업 직접수출증가율	- 제출생략 * 관세청 미 집계 무체물(소프트웨어, 전자서적, 음향물 등) 수출실적을 보유한 경우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한 용역/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 별도 제출
수출의지	경영주 또는 수출전담인력 수출관련 (해외인증포함) 교육 이수	- 교육 수료증 제출(18년, 19년 교육 수료증) * 수료증에 기업명 미기재 경우 재직증명서 제출 * 제출서류는 1인에 한함
	경영주 또는 수출전담인력이 수출 관련 전공자	- 졸업증명서, 졸업증명서 해당 직원의 재직증명서 제출 * 제출서류는 1인에 한함
	경영주 또는 수출전담인력이 수출 관련 자격증 보유자	- 자격증, 자격증 보유 해당 직원의 재직증명서 제출 * 제출서류는 1인에 한함
	수출 전담조직 보유	- 조직도(인력현황포함), 전담 직원 재직증명서 제출
	시장개척단 파견기업	- 주관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또는 주관기관이 작성한 참가확인서 1부 (확인서가 없는 주관기관은 별첨 제1-4호 서식 활용)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원산지인증수출자 획득기업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1부
	해외지사 보유기업	- 해당국가에서 발행하는 사업자 등록증
수출준비 활동	- 외국어카타로그 사본1부	
정책고려 사항	신규수출국가 개척 도전기업	- 제출생략
	단독추진기업	
가점	여성기업	- 여성기업확인서 (또는 여성기업법 제2조1호에 의한 여성기업임을 입증할수 있는 자료)
	교육연계지원 성공기업	- 제출생략
	타 수출사업 연계	- 제출생략

【별첨 제1-2호】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대표자용)

중소벤처기업부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①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귀하의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귀하의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

②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 금융거래 정보(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설정 및 내역정보)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거래실적)

③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귀하의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본인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기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단,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종료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중소기업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의 참여 및 정부지원금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⑤ 중소기업부 및 중소기업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은 관리기관의 장이 위와 같은 목적으로 수집·이용하는 것을 동의합니까?

개인 정보	(휴대)전화번호, e-mail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법인)번호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민감 정보	금융거래정보,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2. 제3자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① 제공·조회 실시 기관

-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 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

② 제공·조회 목적

- 신용도 판단(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 납세실적, 신용등급 및 평점정보

③ 제공·조회할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

- 법인 및 개인식별 정보 : 고유식별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 본인과 관련된 기업의 재무정보, 수출입 통관 관련정보 등 기업 관련 정보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유식별정보, 성명,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위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보유목적 달성시 또는 정보주체가 삭제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해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중소기업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의 참여 및 정부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⑥ 중소기업부 및 중소기업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은 관리기관의 장이 위와 같은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 하는 것을 동의합니까?

개인 정보	(휴대)전화번호, e-mail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법인)번호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 법인사업자

- 법인명 : _____ 법인번호(사업자등록번호) : _____ (_____)
- 동의자(대표) 성명 : _____ (인) ○ 주민등록번호 : _____

■ 개인사업자

- 기업명 : _____ 사업자등록번호 : _____
- 동의자(대표) 성명 : _____ (인) ○ 주민등록번호 : _____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하의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타 금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담당자용)

중소벤처기업부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귀하의 개인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선정과정 및 지원기간 동안의 연락·확인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

② 수집·이용할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 정보(성명,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③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위 개인정보는 제공된 날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보유 목적 달성시 또는 정보주체가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④ 중소기업부 및 중소기업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은 관리기관의 장이 위와 같은 목적으로 수집하는 것을 동의합니까?

개인 정보	(휴대)전화번호, e-mail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	------------------	---

20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첨 제1-3호】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목적

- ①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기업 지원이력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정책수립에 활용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① (기업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 ②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업일, 휴업일, 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제25조에 근거한 “고용장려금 지원실적”, 가족친화법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 여부”, 고용노동부 선정 “청년친화강소기업 인증 여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4조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인증 여부”,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4조에 따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 여부”,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여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7조의2에 따른 “성과공유기업 여부”, 중소벤처기업부 내일채움공제 가입여부,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여부, 우리사주조합 운영 여부, 스톡옵션 운영 여부,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가입여부 등에 한함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 및 이용
 -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 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 (인)
대표자 ○○○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 조회, 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참가 확인서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 소				
용 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구비서류			
참가	전시회명		기 간	
	시장개척단명			
참가 국가				
주관기관 확인란	직 책 :		성 명 :	(인)
	연락처 :			
<p>상기기업은 위 내용과 같이 ○○○○○○ 사업 참여기업임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주 관 기 관 명 (관인)</p>				

【별지 제2호】

2019년도 제○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협약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과 기업명 대표(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과제(이하 “과제”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 1조 과제 개요

접수번호 :

관리번호 :

기업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	
신청구분	(공모지원, 교육연계지원)		주요 생산품목		
설립 년월일		사업의 종류(업태)		사업의 종목(업종)	
주 소					
기업 전화번호			기업 팩스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E-MAIL			대표자 핸드폰번호		
과제 책임자 성명			과제 책임자 직책		
과제 책임자 E-mail			과제 책임자 핸드폰번호		
매출액 (전년도)	백만원		지원비율구분	전년도 매출액 30억원 이하(70%) 전년도 매출액 30억원 초과(50%)	

□협약내용

협약구분	수출 국가구분	수출 예정국가	인증명칭	신청품목	분야코드	품목분야 (HS code)	정부지원금 한도액
협약1							천원
협약2							천원
협약3							천원
협약4							천원
⋮							천원
과제수행기간 :					총 협약금액		천원

* 과제수행기간은 협약체결 시작일로부터 2년임.

□ 인증기관, 시험기관, 컨설팅기관

추진방법	인증예정기관 (인증기관)	시험예정기관 (시험기관)	컨설팅예정기관 (컨설팅기관)	컨설턴트/ 연락처
1. 인증명 [단독추진/컨설팅기관대행]				
2. 인증명 [단독추진/컨설팅기관대행]				
3. 인증명 [단독추진/컨설팅기관대행]				
4. 인증명 [단독추진/컨설팅기관대행]				
⋮				

※ 선정 시 단독으로 추진기로 한 인증은 컨설팅비를 제외한 인증비, 시험비에 대해서만 지원

※ 선정 시 단독으로 추진기로 한 인증이 인증추진 과정에서 컨설팅기관을 이용한 경우 선정 무효로 간주하여 협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제 2조 정부지원금의 산정

- ① 사업 운영지침의 【별표 3】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기준”에 따라 각 인증별로 합산하여 산정한다.
- ② 과제수행기간 중 중간정산 또는 부분완료로 정부지원금을 기 지급받은 경우 전항①에 따라 산정된 정부지원금에서 차감하여 재 산정한다.
- ③ 정부지원금 산정금액 단위는 “천원”이며, 천원 미만은 절사한다.

제 3조 완료보고 및 정부지원금의 지급

- ① 참여기업은 과제수행 완료 후 30일 이내에 완료보고서를 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관리기관은 참여기업이 인증획득 후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증서 사실 확인 등을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약체결 당시의 지급기준에 따라 참여기업에 기 지급된 정부지원금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단, “제 2조 정부지원금의 산정”에 의해 산정된 정부지원금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당해년도 사업비 소진시 차년도 사업비로 지급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부지원금 지급이 지연 될 수 있다.)
- ③ 관리기관은 사업 운영지침 【별표 3】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기준”에 의거하여 인증획득에 소요된 실제 집행비용에 50% 또는 70%를 산정하고, 정부지원금 한도액과 비교하여 적은 금액에서 기 지급된 중간정산금 및 부분완료 정부지원금은 제외하고 지급한다.
- ④ 2개 이상의 인증을 수행한 경우 모든 인증 완료 후 전항②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부분 완료보고를 할 수 있다.
- ⑤ 2개 이상의 인증 구분은 발행된 인증서 건수에 의거한다.

제 4조 협약의 해지 및 참여제한 조치

- ①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본 협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참여기업의 부도 및 폐업

- 나. 참여기업이 과제의 수행을 임의로 포기한 경우
 - 다. 과제수행기간 내에 과제의 수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 라. 특별한 사유 없이 관리기관으로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마. 추진 중인 과제의 목표가 다른 사업용역의 수행에 의하여 사실상 성취되어 본 과제 수행을 계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 바.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를 수행한 경우
 - 사. “VI. 참여기업 신청 및 선정. 5. 지원대상 기업 선정. 바”의 사유로 선정을 취소하는 경우
 - 아.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과제 수행이 불가능 하거나 불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참여기업은 전항① 및 “운영지침” 상 사업 참여 제한 기준에 따른 제한사유가 발생하여 협약이 해지 될 경우 기 지급된 정부지원금은 모두 반납하여야 하고 “참여기업 사업 참여 제한기준”에 따라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 ③ 관리기관은 수출 및 매출실적 허위기재(제출)등 허위보고, 관련문서의 위·변조로 정부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정부지원금 중간정산 수령 후 성실실패로 간주되지 않을 시 정부지원금을 환수한다.

제 5조 기 타

- ① 과제 수행 중 참여기업이 협약을 변경할 경우 “제2조 정부지원금의 산정”에 따라 참여 기업에 지급될 정부지원금 한도액이 감액 될 수 있다.
- ② 관리기관은 참여기업이 정부지원금 중간정산 신청 시 인증획득비용의 50%와 중산정산금 신청일 기준 지출한 인증획득비용과 협약금액의 50%를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정부지원금 중간정산으로 1회에 한해 지급할 수 있으며, 최종정부지원금은 본 협약서 3조를 따른다.
- ③ 관리기관은 과제의 중간점검이나 수행결과의 검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참여기업 또는 컨설팅기관에 대하여 지도·점검할 수 있다.
- ④ 참여기업은 수출실적 등 사업성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기관이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한다.
- ⑤ 기타 본 협약에서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운영지침에 따른다.

2019년 월 일

관리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인

참여기업 (참여기업명)

대표자 인

<참고>

1. 협약서 작성요령

- 관리기관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 협약대상자 : 관리기관과 참여기업간 체결
관리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변 중 립
참여기업명 기업명 대표 ○ ○ ○
- 참여기업은 온라인에서 협약서를 작성하고 공인인증서로 인증 후 관리기관에 온라인 제출
- 관리기관은 제출된 협약서를 검토하고, 협약서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입력
- 전 화 : 02)2164-0173~8
- F A X : 02)507-8118
- 담당부서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수출인증사업단
- 협약서 제출 기간 :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협약서 제출

2. 협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 신청서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 신청서에 기재된 인증명칭, 인증품목, 정부지원금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
- 협약서상의 금액 단위는 천원임
- 정부지원금, 정부지원금 중간정산 등 산정시 발생하는 천원 미만금액은 절삭
- 과제책임자의 지정
- 참여기업의 경우 실제 인증획득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입력하고, 컨설팅기관의 경우 해당 과제수행 컨설턴트를 선택
- 정부지원금 한도액
- 인증분야별/매출규모별 정부지원금 한도기준에 따라 자동 입력됨

3. 기타 유의사항

- 과제수행기간내에 과제를 완료하여야 함
- 과제수행기간은 협약체결일로 부터 2년을 원칙으로 함. 단, 관리기관의 장이 승인할 경우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가능(최장 3년까지 가능)
- 시험기관에 대한 사항
- 사업운영지침의 [별표 5] “제품 시험기관 자격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이용토록 함
- 협약의 변경 및 해지 : 사업운영지침 숙지
- 지원대상기업 선정 이후, 협약체결에서부터 과제수행 완료보고까지의 사업운영·관리에 관한 모든 업무추진은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별첨 제2-1호】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책분석 및 사후관리 정보 활용 동의서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하‘KTR’) 귀중

본인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관리기관(KTR)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관련하여 공공기관·관리기관에서 정책자료(성과분석 등)로 활용,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등
수집·이용할 항목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 수출에 관한 거래 내역,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기업정보 및 관련된 기업정보, 세금계산서 발급,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과세정보(단, 활용정보는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 수출액에 한함), 매출/수출실적자료 등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기업 정보는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수집),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와 관련한 신청, 지원, 협약체결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를 위하여 제출한 서류일체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인 경우에는 지원결정 취소, 정부지원금 반납, 참여 제한 등 제재나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2. 기업(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조회대상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 중소기업 관계기관(자자체 등),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수출입은행, 관세청,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등
조회 목적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관련하여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등
조회할 기업(신용)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금융회사, 보증기관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귀하의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 ▶ 중소기업 관계기관,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산업부 등 공공기관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 수출실적 ▶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별정보 :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신청한 계약의 목적 달성 때까지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계약이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와 관련한 신청, 지원, 협약체결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조회 동의여부	본인(개인, 법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3. 기업(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 중소기업 관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기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관리기관, 정책자료 관련 용역업체(중소기업연구원, 한국리서치 등) ▶ 중소기업 해외진출지원협의회 KOTRA,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수출입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 기업은행,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 등
제공받는 자의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입은행,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 중소기업 관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기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관리기관, 정책자료 관련 용역업체(한국리서치, 중소기업연구원 등) :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의 수행 ▶ 인증획득 기업의 수출성과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에 활용
제공할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 보증기관 등에 제공되는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 수출실적 ▶ 수출입은행,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식별정보 등 자료 ▶ 중소기업 관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기관 : 식별정보(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수출관련 실적자료, 정책 지원내역 등
제공받는 자의 기업(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제공된 날로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한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와 관련한 신청, 지원, 협약체결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제공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4. 공공기관 등 보유 신용정보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 국가기관(산업통상자원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등),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등
제공·조회 목적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관련 조사, 평가, 정책자료 및 사후관리에 이용
제공·조회 정보의 항목	▶ 식별정보 :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수출 관련 실적자료 등 ▶ 과세 및 납세정보(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등), 정책지원내역 등
제공·조회 정보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조회)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와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협약체결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신용정보를 KTR에 제공하여, KTR이 조회하는 것에 동의하며 지원업체로 결정될 경우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중소기업수출지원사업 홈페이지와 정책자료,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수행을 위해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권한부여에 대한 동의여부	KTR이 본인을 대리하여 대상기관인 국가기관 등에 위와 같이 본인의 신용 정보를 제공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년 월 일

■ 법인사업자

기업체명		대표자	(인)
법인등록번호	-	연락처	() -
사업자등록번호			

■ 개인사업자

기업체명		대표자	(인)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

※ 본인은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사(귀하)의 신용조회사실이 귀사(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협약내용

협약구분	수출 국가구분	수출 예정국가	인증명칭	신청품목	분야코드	품목분야 (HS code)	정부지원금 한도액
협약1							천원
협약2							천원
협약3							천원
협약4							천원
⋮							천원
과제수행기간 :					총 협약금액		천원

□ 인증 추진 현황

인증진행현황	제품개발	<input type="checkbox"/> 준비 <input type="checkbox"/> 진행 <input type="checkbox"/> 완료 <input type="checkbox"/> 보완	완료예정일	yy-mm-dd
	시험	<input type="checkbox"/> 준비 <input type="checkbox"/> 진행 <input type="checkbox"/> 완료 <input type="checkbox"/> 보완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심사	<input type="checkbox"/> 준비 <input type="checkbox"/> 진행 <input type="checkbox"/> 완료 <input type="checkbox"/> 보완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인증	<input type="checkbox"/> 준비 <input type="checkbox"/> 진행 <input type="checkbox"/> 완료 <input type="checkbox"/> 보완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인증진행 추진실적				
인증추진 애로사항				
향후 추진계획				

□ 파일 업로드(관련자료)

증빙자료	1. 시험, 인증기관 접수증 또는 계약서 2. 시험·인증획득 진행 현황에 따른 증빙서류
------	---

【별지 제4호】

2019년도 제○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정부지원금 중간정산 신청서

접수번호 :

관리번호 :

201	년	월	일
참여기업 _____ 대표자 _____ (공인인증서) (사업자등록번호)			
관리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귀하			
첨부 1. 인증획득 총 예상 인증획득비용에 대한 해당 기관별 인증비용, 시험비용, 컨설팅비용에 대한 Invoice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도 가능) 각 1부(비용청구에 대한 상세항목이 명시되어야 함) 2. 해당 기관별 인증인증획득비용 송금(이체)증명서 1부(인증비용, 시험비용, 컨설팅비용 등 지급확인용) 3. 정부지원금 중간정산 지급받을 통장 사본 1부 4. 사업자등록증 1부 * 각 첨부서류의 사본에는 항상 “원본대조필” 과 “회사직인” 표시가 있어야 함			

기업정보

기업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신청구분	(공모지원, 교육연계지원)	주요 생산품목	
설립 년월일	사업의 종류(업태)	사업의 종목(업종)	
주소			
기업 전화번호		기업 팩스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E-MAIL		대표자 핸드폰번호	
과제책임자 성명		과제책임자 직책	
과제책임자 E-mail		과제책임자 핸드폰번호	
매출액 (전년도)	백만원	지원비율구분	전년도 매출액 30억원 이하(70%) 전년도 매출액 30억원 초과(50%)

협약내용

협약구분	수출 국가구분	수출 예정국가	인증명칭	신청품목	분야코드	품목분야 (HS code)	정부지원금 한도액
협약1							천원
협약2							천원
협약3							천원
협약4							천원
⋮							천원
과제수행기간 :					총 협약금액		천원

□ 인증기관, 시험기관, 컨설팅기관 인증획득비용

신청구분	인증기관 (인증획득비용)	시험기관 (인증획득비용)	컨설팅기관 (인증획득비용)
1. 인증명			
2. 인증명			
3. 인증명			
4. 인증명			
⋮			

* 정부지원금 중간정산 신청 시점 기 납부된 인증·시험·컨설팅 인증획득비용만 기재

□ 정부지원금 중간정산 산정

신청구분	인증획득 총 예상 인증획득비용*	정부지원금 중간정산 산정액(A)	인증획득비용 납부액(B)	정부지원금 중간정산 한도액(C)	최종 정부지원금 중간정산
1. 인증명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2. 인증명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3. 인증명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4. 인증명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 해당 인증 건에 대한 인증획득 총 예상 인증획득비용을 기입

- 1) 정부지원금 중간정산 산정액(A) : 인증획득 총 예상인증획득비용의 50%
- 2) 인증획득비용 납부액(B) : 정부지원금 중간정산 신청일 기준까지 납부한 인증획득 인증획득비용
- 3) 정부지원금 중간정산 한도액(C) : 정부출연금 한도액*×1/정부출연금 한도액*의 합×총 협약금액의 50%
*고비용인증 : 협약 시 제출된 견적비용*정부지원비율
- 4) 최종 정부지원금 중간정산 : (A), (B), (C) 중 적은금액

□ 정부지원금 중간정산 지급 요청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 은행계좌는 반드시 참여기업의 통장이어야 하며, 예금주는 참여기업이 법인인 경우 법인명,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명이어야 함

□ 파일 업로드(관련자료)

증빙자료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증획득 총 예상 인증획득비용에 대한 해당 기관별 인증비용, 시험비용, 컨설팅비용에 대한 Invoice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도 가능) 각 1부 (비용청구에 대한 상세항목이 명시되어야 함) 2. 해당 기관별 인증인증획득비용 송금(이체)증명서 1부 (인증비용, 시험비용, 컨설팅비용 등 지급확인용) 3. 정부지원금 중간정산 지급받을 통장 사본 1부 4. 사업자등록증 1부

【별지 제5호】

2019년도 제○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부분)완료보고서

접수번호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사업운영지침 및 협약서 제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과제추진 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참여기업 _____ 대표자 _____ (직인)
 (사업자등록번호)

관리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귀하**

- 첨부 1. 성과보고서 1부
 2. 인증서사본 1부 (DoC인증의 경우 참여기업의 적합선언문 사본 1부)
 3. 인증심사보고서 1부 (인증심사를 진행한 경우에 한함)
 4. 공장심사보고서 1부 (공장심사를 진행한 경우에 한함)
 5. 시험성적서 1부(각 시험규격별 요약본)
 6.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인증비용, 시험비용, 컨설팅비용에 대한 Invoice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도 가능) 각 1부 (비용청구에 대한 상세항목이 명시되어야 함)
 7. 각 해당 기관에 이체한 송금(이체)증명서 1부(인증비용, 시험비용, 컨설팅비용 등 지급확인용)
 8. 정부지원금 지급받을 통장사본 1부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 통장사본, 개인일 경우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9. 사업자등록증 1부

※ 각 첨부서류의 사본에는 장마다 반드시 “원본대조필”과 “직인”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함
 ※ 과제수행 마감일 우편 소인분 까지만 인정

1. 참여기업 정보

기업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	
신청구분	(공모지원, 교육연계지원)		주요 생산품목		
설립 년월일		사업의 종류(업태)		사업의 종목(업종)	
주 소					
기업 전화번호			기업 팩스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E-MAIL			대표자 핸드폰번호		
과제책임자 성명			과제책임자 직책		
과제책임자 E-mail			과제책임자 핸드폰번호		
매출액 (전년도)	백만원		지원비율구분	전년도 매출액 30억원 이하(70%) 전년도 매출액 30억원 초과(50%)	

2. 과제수행 내용

협약구분	수출 국가구분	수출 예정국가	인증명칭	신청품목	분야코드	품목분야 (HS code)	정부지원금 한도액
협약1							천원
협약2							천원
협약3							천원
협약4							천원
⋮							천원
과제수행기간 :					총 협약금액		천원

인증기관, 시험기관, 컨설팅기관 및 인증획득비용

추진방법	인증기관 (인증획득비용)	시험기관 (인증획득비용)	컨설팅기관 (인증획득비용)	컨설턴트/ 연락처
1. 인증명 [단독추진/컨설팅기관대행]				
2. 인증명 [단독추진/컨설팅기관대행]				
3. 인증명 [단독추진/컨설팅기관대행]				
4. 인증명 [단독추진/컨설팅기관대행]				
⋮				

인증획득 정보

신청구분	인증기관	인증번호	인증획득일자
1. 인증명 [단독추진/컨설팅기관대행]			
2. 인증명 [단독추진/컨설팅기관대행]			
3. 인증명 [단독추진/컨설팅기관대행]			
4. 인증명 [단독추진/컨설팅기관대행]			
⋮			

3. 최종 정부지원금 산정

□ 정부지원금 중간정산 지급 현황(해당 시)

신청구분	신청일자	정부지원금 중간정산 요청액	정부지원금 중간정산 산정액	정부지원금 중간정산 한도액	정부지원금 중간정산	지급일자
1. 인증명		천원	천원	천원	천원	
2. 인증명		천원	천원	천원	천원	
3. 인증명		천원	천원	천원	천원	
4. 인증명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 부분 완료보고 정부지원금 지급 현황(해당 시)

신청구분	신청일자	인증획득비용	인증획득비용 산정액	최종 정부지원금 한도액	정부지원금	지급일자
1. 인증명		천원	천원	천원	천원	
2. 인증명		천원	천원	천원	천원	
3. 인증명		천원	천원	천원	천원	
4. 인증명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 인증획득 인증획득비용 현황

신청 구분	인증획득비용(A)	인증획득비용 산정액* (C)	(예상 또는 최종) 정부지원금한도액 (D)	기지급금** (E)	정부지원금*** (F)
1.		A * B			· C>D일 경우 = D-E · C≤D일 경우 = C-E
2.					
3.					
4.					
⋮					
계					

* 인증획득비용 산정액(C) : 인증획득비용(A)에 지원비율구분(B)(매출액 30억원 이하 70%, 30억원 초과 50%)을 적용한 금액

** 기지급금(E) : 정부지원금 중간정산 또는 부분완료보고 정부지원금을 합한 금액

*** 정부지원금(F) : 인증획득비용 산정액과 정부지원금한도액 중 적은 금액으로 지원(정부지원금 중간정산 및 부분완료보고 정부지원금 지원대상 기업은 기 지급된 정부지원금 차감 후 지급)

4. 정부지원금 지급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 은행계좌는 반드시 참여기업의 통장이어야 하며, 예금주는 참여기업이 법인인 경우 법인명이 되고,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명이어야 함

5. 과제 추진에 따른 성과(예상)

구 분	인증획득전 (20xx년)	인증획득후 (20xx년)(예상)	증가율 (전년대비,%)
수출지역수(대상국가수)			
수출액(US \$)			
수출계약건수(건)			
국내매출액(백만원)			
종업원 수(명)			
영업이익(백만원)			

※ 아래내용은 서식에 맞추어서 아래한글로 작성하여 첨부파일로 등록

<p>1) 추진경위 및 추진목표</p> <p>2) 인증추진 절차</p> <p>3) 추진결과 (인증 전·후 50자 이내로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비교하여 기술)</p> <p> 1. 경영환경향상 : 인증획득 전 / 인증획득 후</p> <p> 2. 기술력향상 : “</p> <p> 3. 대외인지도 : “</p> <p> 4. 홍보효과 : “</p> <p> 5. 고용효과 : “</p> <p> 6. 수출전망 : “</p> <p>4) 컨설팅수행방법 및 주요성과(해당 기업만 작성) (컨설팅 착수단계별 작업내용 기술하고, 현안문제 파악, 해결방안 도출)</p> <p>5) 인증사후관리 방안</p> <p>6) 향후 전망 및 기대효과</p>
<p>성과보고_기업명.hwp (파일등록완료)</p>

6. 인증획득 추진일정 (년월표기, (예) 20xx.xx~20xx.xx)

인증명칭	준비기간	개발기간	시험기간	인증기간

- * 준비기간 : 인증필요 시기부터 인증인증획득비용, 컨설팅 결정 등 소요시기
- 개발기간 : 순수 제품개발기간(인증획득일과 중복, 선추진 관계없음)
- 시험기간 : 순수 제품에 대한 시험 완료 및 Debugging 기간
- 인증기간 : 제3자 인증기관에서의 심사 및 공장심사 포함한 기간

- * 완료보고서 제출 시 인터넷으로 등록한 성과보고서 파일을 인쇄하여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함
- * 제출처 : (13810)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98(중앙동)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본관1동 303호 수출인증지원팀 앞
- * 문의처 : 02-2164-0173 ~ 0178

【별지 제6호】

2019년 제○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실패보고서

접수번호 :

201 년 월 일

참여기업 _____ 대표자 _____ (직인)
(사업자등록번호)

관리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귀하

- 첨부 1. 부적합 시험성적서, 인증심사 부적합 보고서 등 1부(시험인증 진행 및 실패사유증빙용)
 2. 인증비용, 시험비용, 컨설팅비용에 대한 최종Invoice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도 가능) 각 1부 (비용청구에 대한 상세항목이 명시되어야 함)
 3. 인증획득비용 송금(이체)증명서 1부(인증비용, 시험비용, 컨설팅비용 지급확인용)
 * 각 첨부서류의 사본에는 항상 “원본대조필” 표시가 있어야 함

1. 참여기업 정보

기업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
신청구분	(공모지원, 교육연계지원)	주요 생산품목	
설립 년월일	사업의 종류(업태)	사업의 종목(업종)	
주 소			
기업 전화번호		기업 팩스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E-MAIL		대표자 핸드폰번호	
과제책임자 성명		과제책임자 직책	
과제책임자 E-mail		과제책임자 핸드폰번호	
매출액 (전년도)	백만원	지원비율구분	전년도 매출액 30억원 이하(70%) 전년도 매출액 30억원 초과(50%)

2. 과제수행 내용

협약구분	수출 국가구분	수출 예정국가	인증명칭	신청품목	분야코드	품목분야 (HS code)	정부지원금 한도액
협약1							천원
협약2							천원
협약3							천원
협약4							천원
⋮							천원
과제수행기간 :					총 협약금액		천원

인증기관, 시험기관, 컨설팅기관 및 인증획득비용

추진방법	인증기관 (인증획득비용)	시험기관 (인증획득비용)	컨설팅기관 (인증획득비용)	컨설턴트/ 연락처
1. 인증명 [단독추진/컨설팅기관대행]				
2. 인증명 [단독추진/컨설팅기관대행]				
3. 인증명 [단독추진/컨설팅기관대행]				
4. 인증명 [단독추진/컨설팅기관대행]				
⋮				

3. 정부지원금 산정

정산금액

신청구분	인증획득비용(A)	인증획득비용산정액(B)	정부지원금 중간정산(C)	최종정산금액(D)
1.				
2.				
3.				
4.				
⋮				
계				

- 인증획득비용 산정액(A*0.5) : 인증획득비용(A)의 50%
- 최종정산금(D) : 인증획득비용 산정액(B)에서 기 지급된 정부지원금 중간정산(C)을 뺀 금액
- 기 지급된 정부지원금 중간정산 환수조치 : 인증획득비용 산정액이 정부지원금 중간정산액보다 많을시(B≥C) 기 지급된 정부지원금 중간정산은 환수하지 아니하나 정부지원금 중간정산액이 작을시(B<C) 차액분은 환수함
 - * 환수에 불응시 동 사업 영구참여제한 조치
- 성실실패 신고 시 진행하던 과제는 포기로 간주하여 참여제한 조치함

정부지원금 지급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 은행계좌는 반드시 참여기업의 통장이어야 하며, 예금주는 참여기업이 법인인 경우 법인명,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명이어야 함

4. 실패사유 및 향후계획

--